연구보고 | 2014.01

농어촌민박 조식제공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 동 규 책임연구원
오 현 석 연 구 원
송 완 구 연 구 원
지 민 정 연 구 원

지역아카데미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민박 조식제공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01.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 현 석**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제2장 농어촌민박 현황 ····· 7

1. 숙박업의 개념과 분류 ····· 9
2. 농어촌민박의 개념과 특성 ····· 20
3.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 27
4.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 49

제3장 해외 사례 검토 ····· 53

1. 사례 검토 개요 ····· 55
2. 프랑스 사례 ····· 56
3. 독일 사례 ····· 70
4. 시사점 ····· 82

제4장 법 개정을 위한 검토 ····· 87

1. 법이론과 입법실무 ····· 89
2.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 95
3. 법 개정의 방향 ····· 109

제5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 113

1. 법령체계 ····· 115
2. 법령 개정(안) ····· 118
3. 신구조문대비표 ····· 130
4. 중장기 고려사항 ····· 134

제6장 기대효과 및 결론 ····· 137

1. 기대효과 ····· 139
2. 요약 및 결론 ····· 142

부록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 147
부록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서식 ····· 151
부록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별표7 ····· 159
부록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 별표4 ····· 163
부록5. 농어촌민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167

참고문헌 ····· 187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민박과 시장변화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지역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준 21,97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최근 주5일제 근무 및 주5일제 수업의 시행과 웰빙 문화의 확산 등 여행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국내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관광 숙박시설 중의 하나인 농어촌민박 이용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박시현 외(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관광 총량은 2012년 1,505만 일로 2009년도와 비교 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농촌관광객의 25% 이상이 숙박 시설로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2002년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 펜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세한 농어가의 경제피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민원이 2010년 1,236건에서 2012년 1,9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농어촌민박은 관련법에 의해 음식제공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와 소득향상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농어촌민박의 정체성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반면 농촌관광과 숙박여행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서비스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의 본래 취지인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 제도의 정립

-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동법은 1994년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되었던 관광농원사업, 관광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 계승되어 추진되었음

  - 농어촌민박 사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박마을사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시행되었음. 이 사업은 민박 개업을 희망하는 농어가 5호 이상이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마을단위로 사업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은 2002년과 2005년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거치면서 주요 안건이 크게 변화함

  - 2002년의 개정에서는 민박사업에 대한 정의가 바뀜. 농어민에 한정되었던 자격조건이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누구라도 민박 개업이 가능하게 됨. 즉 민박개업에 대한 자유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민박사업의 확대를 의도하였음. 실제로 개정 이후 농어촌민박이 급증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부 도시자본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투자 형태로 펜션 붐을 조성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게 됨. 또한 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가 폐지되었음

  - 2005년의 개정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실제거주자가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외지인에 의한 펜션 건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펜션업자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을 해결함. 또한 객실 수 7실 이하에서 면적기준 150㎡로 규모조건이 개정되어 규모는 확대되었음. 마지막으로 2002년에 폐지된 지정제도가 부활되었으며 증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 이처럼 농어촌민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법체계에서는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 농어촌민박의 품질관리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등 관련 조항 등이 부재하여 현재의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5일제 시행 및 웰빙 문화의 확산 등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관광숙박시설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에 대한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음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유사 시설에 비해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농어촌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펜션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관리규정의 미흡으로 최소한의 품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펜션 등은 품질고급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어촌지역 중고가 숙박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캠핑활동은 중저가 숙박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 숙박수요는 펜션과 캠핑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장에서 농어촌민박 활동이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활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품질관리, 운영 체계 및 육성방향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민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식 제공 활동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여 시장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6차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 농어촌민박 현황과 외국의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농어촌민박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조식제공과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함
- 둘째,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함

- 농어촌민박 현황검토 및 분석
- 농어촌민박 관련규정 검토 및 분석
-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제시

■ 연구의 방법

• 우선, 국내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현황과 법·제도적 관련 문헌(정부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고, 외국의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문헌(국내외 논문, 외국 정부 자료 및 정책자료, 연구자료, 인터넷 매체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농어촌민박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연구내용과 관련 있는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내용 발표로 학계 및 산업계의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연구에 반영토록 함

제2장 농어촌민박 현황

1. 숙박업의 개념과 분류
2. 농어촌민박의 개념과 특성
3.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4.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1 숙박업의 개념과 분류

가. 숙박업의 개념

1) 관련법규

- 숙박업에 관련된 법규는 대표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으로 동법을 통해 숙박업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 및 기준에 따라 숙박시설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숙박업 시설 중 하나인 펜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숙박업 운영이 가능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였음. 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2) 숙박업 정의

- 숙박 및 숙박업은 각각 사전적 의미로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여관, 호텔 따위와 같이 손님을 숙박시키고 요금을 받는 영업[1]으로 정의되고 있음
- 숙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뜻하게 되며, 숙박업은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숙박업과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도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1) 한국어 위키백과

수 있도록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일반적인 범위에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숙박업은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3) 숙박시설 유형

■ 숙박시설 구분

• 숙박시설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여관 및 여인숙(일반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 숙박시설 유형

구분	정의	관련 법규
호텔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관광진흥법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편의시설 중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이 포함되며, 관광편의시설은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말함	관광진흥법
일반숙박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 등을 제공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 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로 정의됨(「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호텔은 시설 기준에 따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 호텔업 종류 및 등록 기준

구분	개념	등록기준
관광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2-3〉 호텔업 종류 및 등록 기준

구분	개념	등록기준
한국전통 호텔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잇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휴양콘도미니엄

-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로(「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관광숙박시설 중의 한 유형임
- 타 숙박시설과 달리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 가능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2-4〉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구분	등록 기준
객실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광편의시설

<관광펜션>

-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을 통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펜션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

-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가. 지역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한옥체험시설>

- 한옥체험시설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를 통해 다음의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카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가.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이 가능함

■ 농어촌민박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 등을 제공하는 것임(「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 농어촌민박의 사업규모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음(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일반숙박시설

-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일반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숙박시설을 지칭하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농어촌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표 2-5〉 숙박업 유형 및 관련 규정

관련부처 및 법령	유형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 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전통 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 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 지역 230㎡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2)

나. 숙박시설 특성

1) 숙박시설별 특성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 특성

- 「관광진흥법」의 숙박시설은 크게 관광숙박업과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다시 분류됨
- 「관광진흥법」상에서 제시하는 관광숙박시설은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등임
- 「관광진흥법」에서 분류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관광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시설운영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각 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관광객의 편의제공이 숙박시설의 주된 기능이며,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기능적으로는 숙박기능 뿐만 아니라 오락,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규정을 별도로 두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광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타 숙박시설과 달리 휴양콘도미니엄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숙박시설의 특성

- 일반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숙박시설로 동법에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손님이 숙박활동을 위한 시설제공에 중심을 두고 있어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숙박시설과 달리 숙박활동 이외의 서비스제공, 기능 확보

등은 고려대상이 아님

■ 농어촌민박사업의 특성

-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숙박시설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타 숙박시설에 비해 비교적 등록이 용이하여 숙박시설 운영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임
-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목적성이 강한 숙박시설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으로 국민 여가수요를 유입시켜 농어촌 거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임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영역으로 시설 입지(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와 사업자(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요건이 있음

- 단, 입지의 경우 타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도 설치 가능함

2)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 비교

-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포함)은 목적과 기능적 차이로 인해 다음의 표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설형태와 사업자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타 숙박시설에 비해 등록, 시설, 관리 등의 관련 법령이 완화되어 있음
- 다만, 농어촌 소득구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를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단, 외국인관광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같은 시설 규정인 230제곱미터 미만을 적용받고 있음)
- 또한 최소시설 규정 역시 일반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주민의 사업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 제정 당시와 변화된 사업 환경은 제도의 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숙박과 취사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농어촌민박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숙박, 취사를 포함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민박은 상업적인 숙박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숙박과 취사 활동에 한정하여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숙박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비교적 쉬운 특성을 지님

〈표 2-6〉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	민박 외 숙박시설
관련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입지	농어촌(준농어촌)지역 내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_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
사업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	규정 없음
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규모	연면적 230㎡미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제외)	각 시설별 규정 상이
제공서비스	숙박, 취사 등	숙박, 취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 다양한 서비스 규정
과세	소득세 과세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2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기본시설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취사, 환대시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목적에 적합한 시설설치 규정 준수 (농어촌민박에 비해 구체화된 시설규정)

2 농어촌민박의 개념과 특성

가. 농어촌민박의 개념

1) 농어촌민박 도입 배경

■ 농외소득 확대를 위한 민박사업 도입

- 1980년대는 도농 소득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민박마을사업 등과 같은 정책사업이 개별단위로 추진되면서 현재 농어촌민박과 유사한 사업들이 시작되었음
- 이 시기 농어촌지역에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박마을 사업이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음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농어촌 소득기반을 강화를 위한 농공지구 조성과 함께 관광사업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박마을사업

- 1983년 농어촌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어업과 연계하여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당하는 도시와 농어촌지역과의 교류, 농어민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됨. 동 법규의 제정과 관련하여 1984년에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이 실시되었고,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 주말농장의 설치가 포함됨. 동 사업에는 1991년에 민박마을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농어촌민박사업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정옥희, 2012)
- 당시, 민박마을사업은, 민박개업을 희망하는 농어가 5호 이상이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마을단위로 사업지정을 받음. 그 후 1994년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민박마을사업은 민박사업으로 개칭되어

추진되었고 민박 개업을 희망하는 주민이 사업지정 대상이 됨

■ 농어촌민박사업

-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 시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농어촌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정제도를 도입함. 동 법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취사시설의 제공이 있어서는 이용객에게 휴대용 가스버너와 식기류를 제공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방을 제공하거나, 숙박하는 객실에 취사시설을 구비한 경우 등이 있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농어가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규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규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규제가 적용받지 않음. 일반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각종 법률에 의거 강한 입지 규제를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이는 제도에 의한 매우 큰 인센티브라 할 수 있음

  - 당시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규제 조항에 따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물론이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입지가 허용되지 않았음. 또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구역에서 입지 규제가 뒤따름. 또한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건축법」에 의거하여 200㎡ 이하, 3층 이하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 함. 반면에 농어촌주택으로 간주되는 농어촌민박 시설은 230㎡까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시설 및 위생관리 규제를 받는 반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설규제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 2002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민으로 한정된 자격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은 누구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제도를 폐지하자, 이러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도시자본이 농어촌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펜션'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난개발, 농촌경관 훼손 등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05년에는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짐. 「농어촌정비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은 농어촌민박 지정제도의 도입임. 즉,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시설기준은 종전 객실 7실 이하에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제한함

- 단, 05년 11월 5일(「농어촌정비법」 개정일) 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객실 7실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동 시설을 타인이 인수할 경우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정리하자면, 농어촌민박은 1991년 민박마을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1994년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본격화되었음. 이후 2002년 개정으로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문제의 야기로 2005년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은 다음의 <표 2-7>에 제시함

〈표 2-7〉 농어촌민박 제도 변천과정

<table>
<tr><th>일자
(해당 제도)</th><th>사업자격</th><th>지정제도</th><th>시설규모</th><th>시설종류</th></tr>
<tr><td>94.12.22
(법 제정)</td><td>농어촌지역
거주농어민</td><td>민박농어가 · 민박마을
지정제도 도입</td><td>농어가 5호 이상</td><td>농어촌주택</td></tr>
<tr><td>99.02.05
(법 개정)</td><td>농어촌지역
거주농어민</td><td>민박농어가 · 민박마을
지정제도 폐지</td><td>농어가 5호 이상</td><td>농어촌주택</td></tr>
<tr><td>02.12.26
(법 개정)</td><td>농어촌지역
주민</td><td colspan="3">객실 7실 이하는 숙박시설 신고 제외(「공중위생관리법」)
객실 8실 이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신고 대상</td></tr>
<tr><td rowspan="2">05.08.04
(법 개정)</td><td rowspan="2">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주민</td><td>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td><td>주택면적
150㎡ 미만</td><td rowspan="2">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td></tr>
<tr><td colspan="2">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05.11.05 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에게는 객실
7실까지는 인정</td></tr>
<tr><td>08.02.04
(시행규칙)</td><td>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주민</td><td colspan="2">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유지
시설규모 확대(150㎡→230㎡ 미만)</td><td>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td></tr>
</tabl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8). 박시현 외(2012)에서 재인용

2) 농어촌민박 정의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농어촌"이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함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

- 농어촌민박은 관련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신고와 시설 운영이 가능함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 사업의 규모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함

나. 농어촌민박의 특성

■ 농어촌민박사업의 목적 : 농외 소득증대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민박마을사업에서 출발하여 현재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이 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포함)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한다는 점인데 이는 농어촌 지역 농외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민박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뜻함
- 특히 시설규모가 230제곱미터로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 역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전문적 숙박시설 운영이 아닌 지역주민이 소유한 시설을 활용하여 보조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입지, 시설, 자격 등 모든 조건이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맥락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실제 민박사업 운영에서도 지역 소득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평균 연 매출 1,350만원, 평균 가계소득 비중 48.3% (농림축산식품부, 2013)

■ 농어촌관광 활성화의 보조적 역할 담당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①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 ② 농어촌주택을 활용하여 ③ 농어촌ㆍ준농어촌지역 주민이 ④ 숙박과 취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체류를 연장시켜 농

외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의 개념과 달리 농어촌(준농어촌)지역이라는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있다는 점에서 타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지님
- 농어촌민박은 국내여행과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주요 소득원이자 농촌관광 환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최근 6차산업화가 정책적, 환경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 부존자원을 관광산업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어촌민박도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적 가치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숙박시설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
- 숙박시설이 관광활동을 유도하는 매력물로 활용되면서 과거 숙박에만 머물러 있던 농어촌민박이 하나의 농촌관광자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비 숙박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시장 확장 한계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는 농어촌민박을 숙박시설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농어촌민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숙박시설에서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규정이 농어촌민박에서는 완화되어 농민들도 쉽게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 특히 농촌관광시장에서 숙박시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없는 일부 농어촌민박들은 기존 숙박시설인 펜션이나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캠핑장 등 농어촌지역의 타 숙박시설과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숙박과 취사에 제한된 서비스 영역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농촌관광에 대응을 어렵게 하여 농외소득 증대라는 관련 법규의 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음
- 변화하는 농촌관광 환경을 반영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이 가지고 있는 시장 확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3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가. 농어촌민박 시장규모 추정

-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민박의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방문객 기준 780만 명의 수준임
- 이는 국내 농촌관광 시장규모인 6,425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농촌관광에 있어 농어촌민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한편, 국내 숙박시장의 총규모는 1조 8,500억 원으로 농어촌민박이 국내 숙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5%로 나타남

- 농어촌민박 시장규모(설문조사) = 개소당 매출액 × 개소수
- 농어촌관광 시장규모(도시민농촌관광실태조사) = 인구수 × 농촌관광 경험률 × 1인당 지출금액
- 국내 숙박업 시장규모(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내 숙박여행 총비용 × 숙박비 구성비

〈그림 2-1〉 민박시장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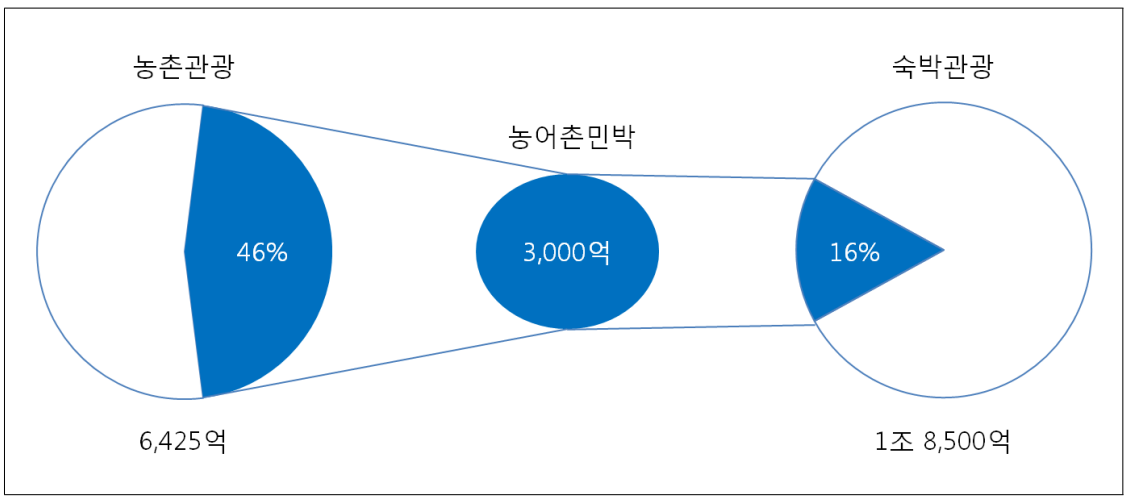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나. 농어촌민박 분포

■ 개소수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은 총 21,971개소에 달함. 2005년의 농어촌민박은 총 11,147개소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8〉 농어촌민박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2005	2007	2011	2012
개소수	11,147	14,805	20,235	21,97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 시도별 분포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은 총 21,971개소에 달하며 강원도 지역에 5,599개소(25.5%)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음. 이어 전라남도 3,159개소(14.4%), 경상남도 2,932개소(13.3%)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10% 미만임

〈표 2-9〉 농어촌민박사업자 분포(2012년, 시도)

(단위 : 개소, %)

지역	개소	비율	지역	개소	비율
대구	3	0.0	충남	1,458	6.6
인천	1,301	5.9	전북	1,002	4.6
울산	162	0.7	전남	3,159	14.4
세종	8	0.0	경북	2,076	9.4
경기	2,064	9.4	경남	2,932	13.3
강원	5,599	25.5	제주	1,240	5.6
충북	967	4.4	**총계**	**21,971**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 시군별 분포

- 시군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시군은 태안군 899개소, 가평군 817개소, 남해군 749개소, 평창군 702개소, 강화군 659개소, 제주시 655개소, 옹진군 642개소 등 바다에 인접한 관광지역에 주로 분포함

〈표 2-10〉 농어촌민박사업자 분포(2012년, 시군 상위 10개소)

(단위 : 개소, %)

지역	개소	비율	지역	개소	비율
태안군	899	4.1	제주시	655	3.0
가평군	817	3.7	옹진군	642	2.9
남해군	749	3.4	거제시	586	2.7
평창군	702	3.2	서귀포시	585	2.7
강화군	659	3.0	고성군	572	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다.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출처 :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 농어촌민박 운영자 및 운영관계자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3.11.04.~11.08(5일간)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질적 민박운영자(95.3%)이며, 성별은 남성 49.3%, 여성 50.7%로 비슷하게 나타남.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8.6세이며 50대가 31.3%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28.3%), 70대 이상(22.0%)의 순임. 40대 이하는 18.4%에 불과함

- 현재 거주지에 평균 거주기간은 33.2년으로 5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35.8%로 가장 많음. 생애대비 거주기간 비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80%이상 거주가 38.7%, 20% 미만 거주가가 32.7%로 비슷하게 나타나 지역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출신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6.3%, 타 지역 출신자는 43.7%로 조사되었음. 평균 민박 운영기간은 7.5년으로, 6~9년 32.2%, 10년 이상 32.1%의 순으로 나타남

3) 조사 결과

■ 농어촌민박 형태 및 규모

- 농어촌민박 시설 형태와 사업규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인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음
- 농어촌민박은 건물을 신축하여 방을 제공하는 형태가 476명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4.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2-2〉 객실 제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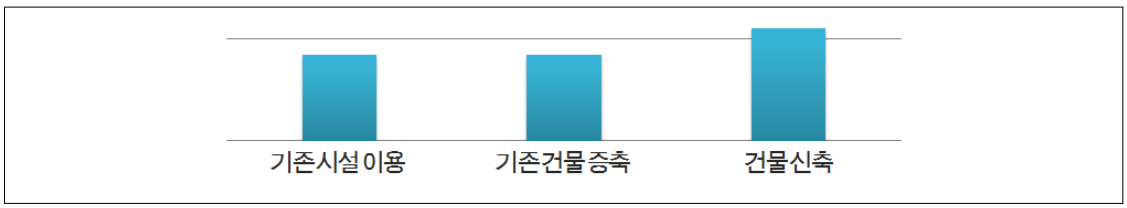

- 하루에 총 수용 가능한 인원은 평균 28.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4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민박도 21.5%로 조사되었음

〈그림 2-3〉 수용 가능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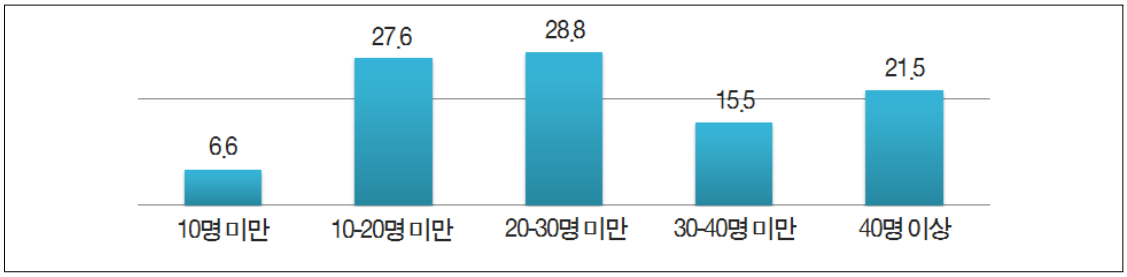

■ 농어촌민박 민박객 현황

- 2012년 농어촌민박을 방문한 민박객 수는 평균 352.4명이었으며, 200명 미만이 방문하는 민박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민박은 전체의 44.6%였으며 25.8%의 민박에서는 연 4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4〉 연평균 민박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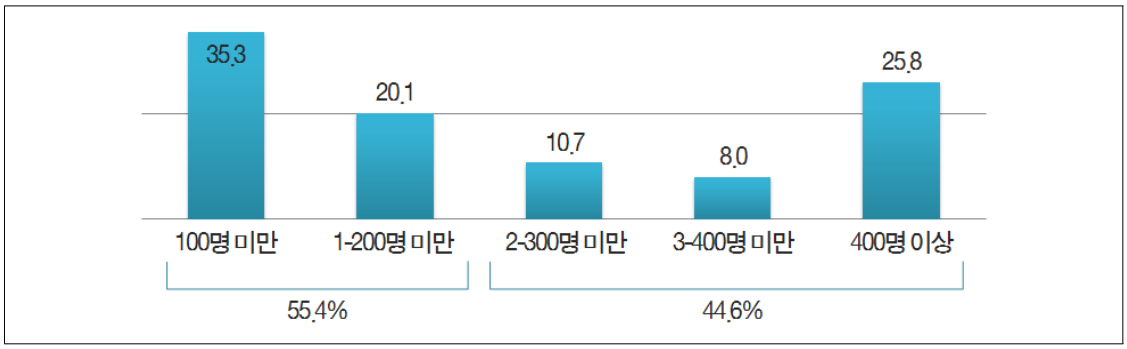

- 민박객 수는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을수록(관광촌 403.6명), 시설 규모가 클수록 민박객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어촌민박만 운영하거나 농어촌민박이 주업인 경우에 연평균 민박객 수가 높게 나타남

■ 농어촌민박 방문목적

- 농어촌민박 방문객은 민박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 휴식이라고 응답하였음(전체의 45.2%)
- 휴식 다음으로는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숙박장소를 민박으로 선택한다는 비율이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체험이나 단체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 비율을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2-5〉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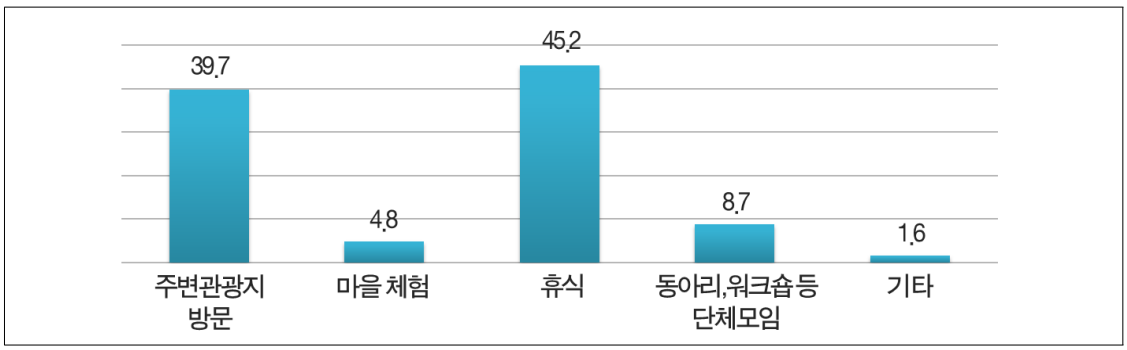

■ 농어촌민박 운영

- 농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주체의 운영형태를 조사하였음
- 주업 또는 부업은 농림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직장생활, 기타 순으로 나타났음
- 운영 주체는 70.8%가 부부/가족이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외부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2.1%에 불과함. 외부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의 평균 고용인원수는 2.2명으로 조사됨

〈그림 2-6〉 운영형태와 운영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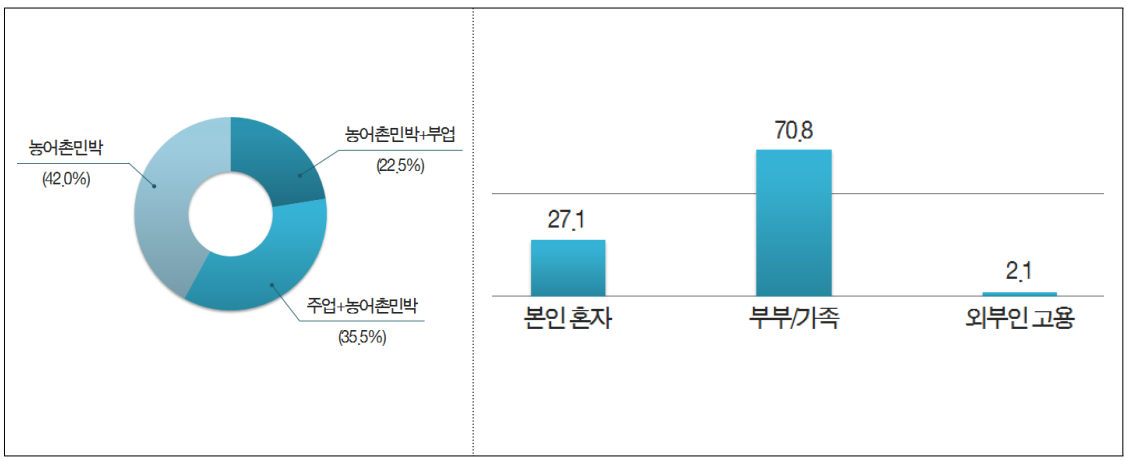

■ 농어촌민박 매출

- 농어촌민박 운영을 통한 수익은 평균 연 1,35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가구가 59.7%를 차지. 민박만 운영을 하거나 민박을 주로 운영하는 형태가 민박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유형보다 연소득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식사까지 제공하는 운영 형태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7〉 연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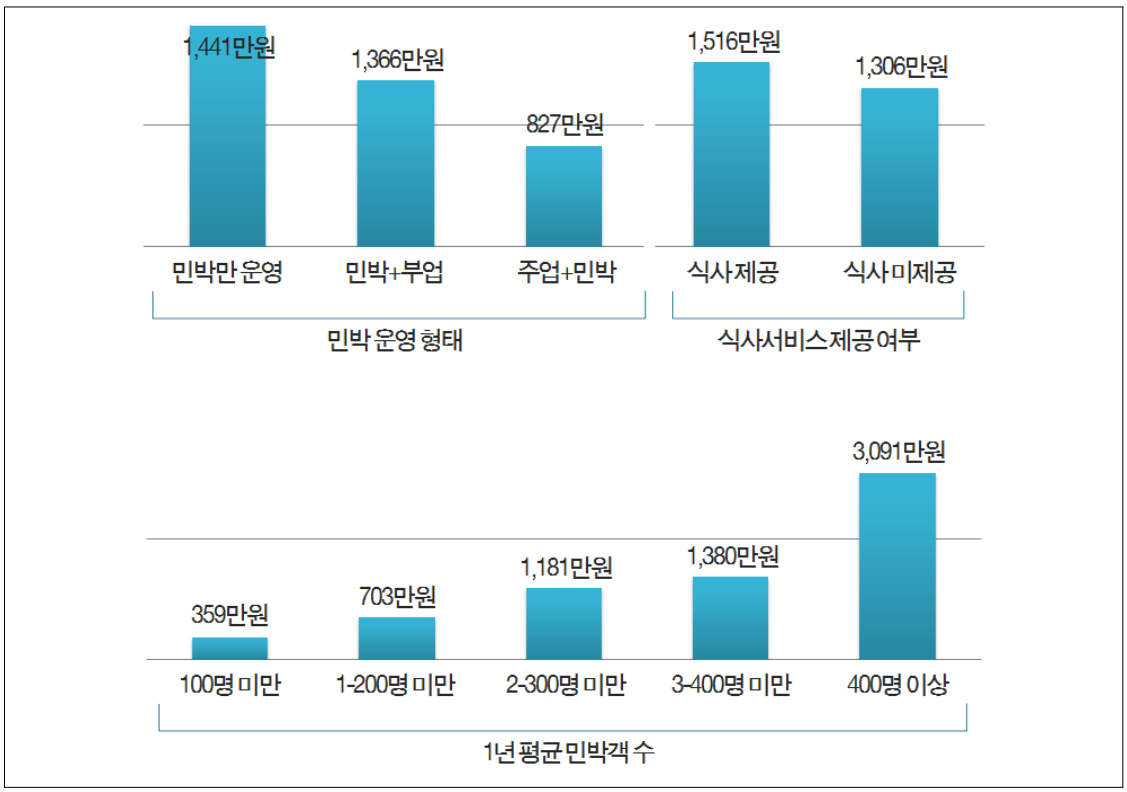

- 민박을 통한 수익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 중 약 30%의 응답자가 전체 가계소득 중 80%이상이 민박 매출이라고 응답하였음. 민박만 운영하는 유형, 연 매출액이 높은 유형일수록 가계소득에서 민박을 통한 수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8〉 민박수익의 가계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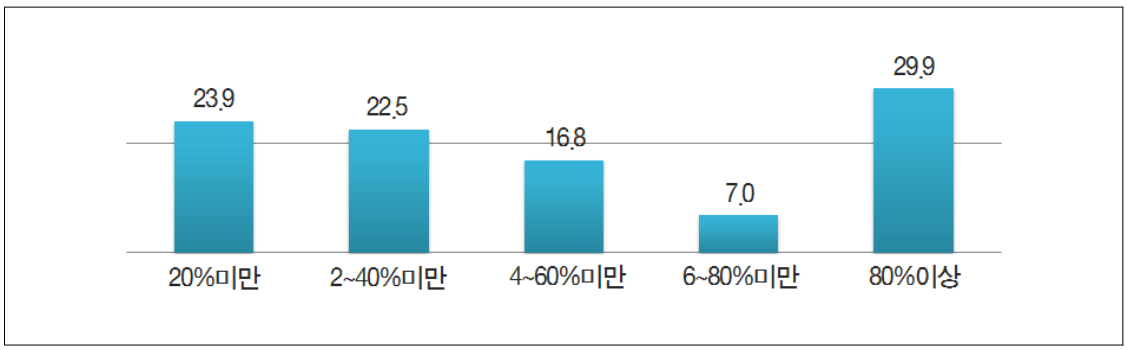

■ 서비스 제공

- 숙박 및 취사 서비스 외 민박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제공이 20.8%로 가장 많은 부대 서비스 유형으로 꼽혔고, 그 다음이 농산물 판매(13.3%)와 관련된 서비스였음

〈그림 2-9〉 서비스 유형별 제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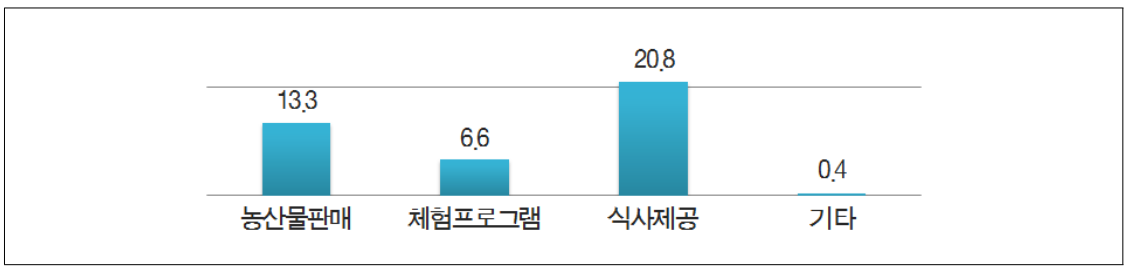

■ 식사 서비스

- 위 질문에서 식사제공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식사형태를 조사하였으며, 약 50%의 응답자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고 함. 26.1%의 응답자는 아침만 제공한다고 하였음
-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44.9%가 공동으로 상차림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객실마다 별도 상차림이 제공되는 곳은 34.6%였음

〈그림 2-10〉 식사 서비스 유형별 제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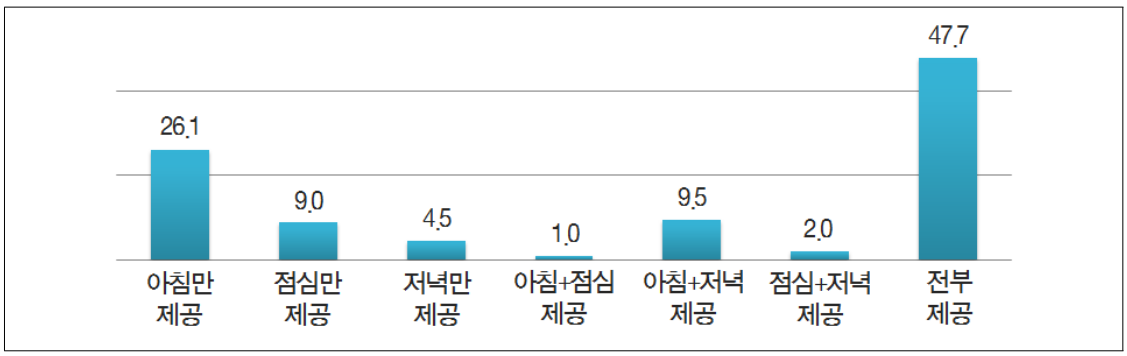

〈그림 2-11〉 식사 서비스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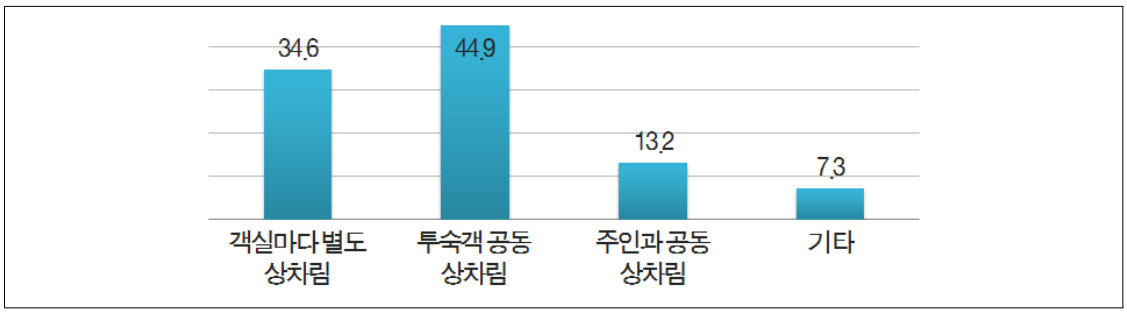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민박 중 56.6%의 응답자가 준비가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0%는 민박객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그림 2-12〉 식사 비제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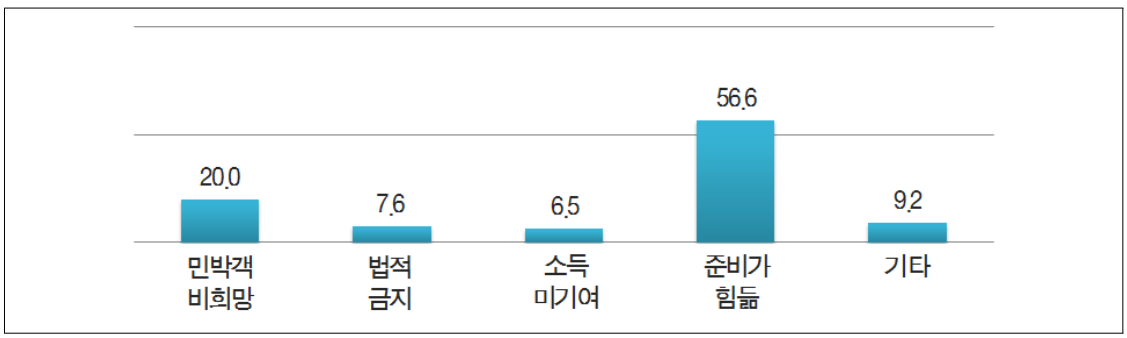

■ 식당운영 및 조리시설

- 현재 농어촌민박은 대부분이 식당 및 기타 음식업을 영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식당 미운영 84.1%)

〈그림 2-13〉 식당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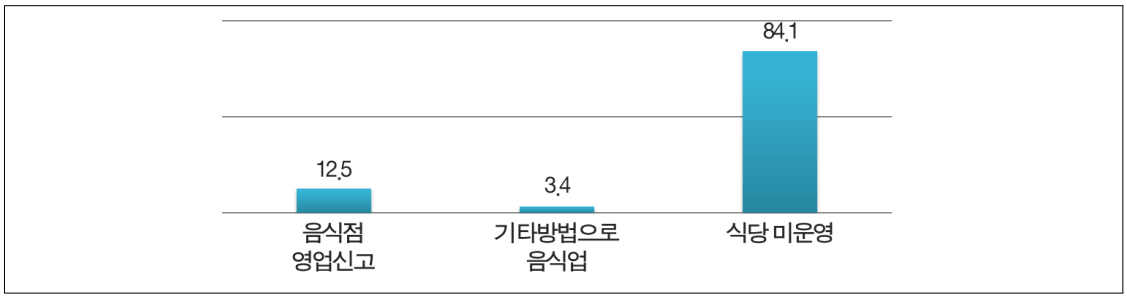

- 민박에 설치되어 있는 조리시설은 대상 민박 중 59.0%가 객실마다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동으로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22.8%였으며, 조리시설이 없는 곳도 18.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14〉 취사 및 조리시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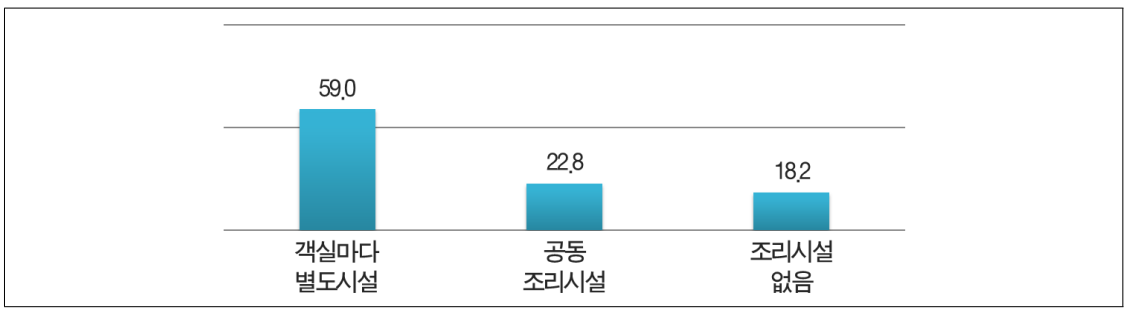

■ 조식제공 제도화 관련 견해

- 조식제공이 제도화 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36.8%가 필요하다, 38.3%가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조식제공 의향에 있어서는 35.4%가 조식제공 의향이 있었으며, 55.8%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15〉 조식 제도화 필요성과 조식 제공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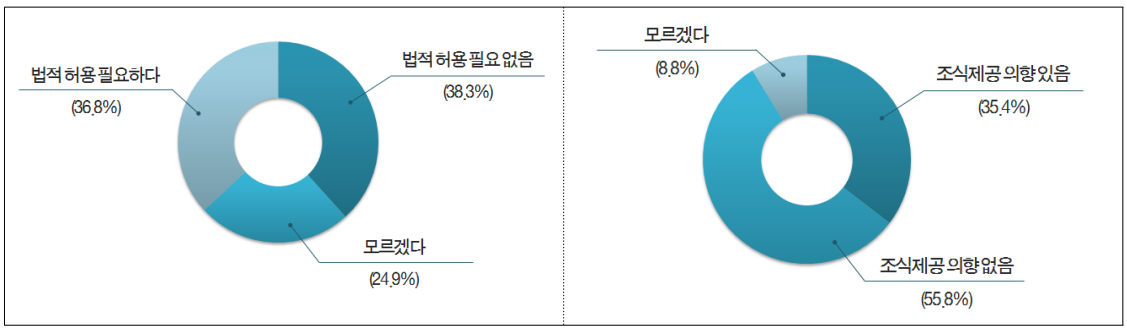

4)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 민박운영자의 특성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 내 거주기간 및 민박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평균 연 매출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 연령, 거주기간, 운영기간별 평균 연 매출

구분		연 매출							
		평균 (만원)	200 만원 미만	~500 만원 미만	~1,000 만원 미만	~1,5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연령	40대 이하	2,355.8	11.0	11.8	15.4	12.5	14.0	18.4	16.9
	50대	1,639.7	18.4	18.7	12.7	11.6	18.0	12.4	8.2
	60대	914.4	20.5	24.8	22.6	13.2	10.3	6.0	2.6
	70대 이상	708.9	26.9	31.4	22.3	6.3	6.9	3.4	2.9
거주 기간	10년 미만	1,518.6	18.1	19.2	14.8	13.2	15.4	11.0	8.2
	10~30년 미만	1,729.0	18.0	16.0	19.4	10.2	14.1	12.1	10.2
	30~50년 미만	1,211.1	18.0	21.1	25.6	9.0	9.8	9.0	7.5
	50년 이상	1,039.7	22.3	28.5	15.8	11.3	11.3	7.2	3.4
운영 기간	7년 미만	1,441.4	22.0	20.8	14.7	11.1	12.6	10.9	7.9
	7년 이상	1,283.8	17.8	22.9	20.6	11.0	12.7	8.7	6.2

■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식사서비스 제공

- 농어촌민박에서 식사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표 2-12〉 식사제공 민박과 비제공 민박의 차이

(단위 : 년, 명, %, 만원, %)

구분		제공 농어촌민박 (n=208)	비제공 농어촌민박 (n=792)
농어촌민박운영기간		9	9
총수용가능인원		27.7	27.6
1년평균 방문객수		550	299
재방문비율		39.2	34.3
연매출액		1,955	1,322
민박업 수익의 가계소득 비중		46.8	49.6
위치	마을 안	61.1	66.8
	마을 밖 소규모 집촌	22.6	16.9
	마을 밖 단독형태	16.3	16.3
촌락 특성	농촌	53.8	48.2
	어촌	20.7	24.6
	산촌	10.1	7.6
	관광촌	15.4	19.6
방문객 변화	점차 감소	58.7	65.0
	점차 증가	14.9	13.0
	현상 유지	26.4	22.0
운영 형태	전업	29.3	45.3
	민박+부업	22.1	22.6
	주업+민박	48.6	32.1
부업/주업 유형	농림어업축산	51.4	65.0
	자영업	41.8	22.8
	직장생활	4.8	8.6
	기타	2.1	3.5
인근식당 조식제공	그렇다	64.1	63.7
	아니다	17.0	13.0
	때에 따라 다르다	13.6	20.0
	기타	5.3	3.2
조식제도화 동의여부	있다	60.1	30.7
	없다	22.6	42.4
	모르겠다	17.3	26.9
조식제공 의향	있다	73.1	25.5
	없다	19.7	65.3
	모르겠다	7.2	9.2

- 부업/주업 유형은 운형영태에서 '민박+부업', '주업+민박'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분석

-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박집단의 경우 비제공 민박에 비해 1년 평균 방문객수, 연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식제도화 동의여부에서도 높은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인 요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트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민박운영형태와 민박시설의 위치, 민박수익의 가계소득 비중에 따라 식사제공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남. 트리분석결과 총 5개의 집단(노드)로 구분되었음

〈그림 2-16〉 식사제공여부에 따른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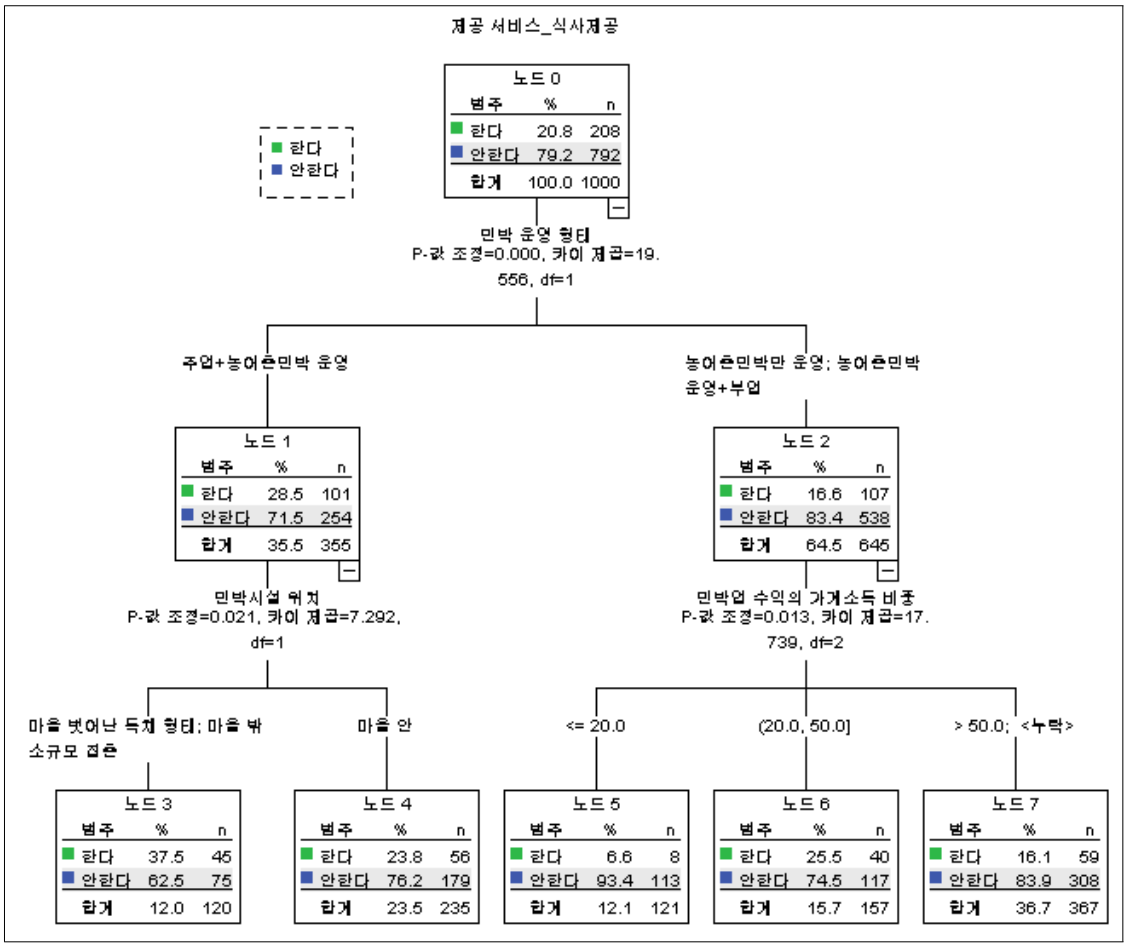

- 식사제공이 가장 활발한 집단(노드)는 3번으로, 부업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민박들임. 그 다음으로는 6번 집단(노드)과 4번 집단(노드)이 활발한데, 6번은 농어촌민박이 전업이거나 주업인 형태이며 민박 수익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50%인 민박이며, 4번은 부업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내에 위치한 민박들임

■ 민박 소득에 따른 조식제공 의향 차이 존재

- 조식제공 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연매출액이며, 마을과 다소 떨어진 곳 일수록 조식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민박수익의 가계소득 비중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조식제공의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남. 트리분석결과 총 5개의 집단(노드)로 구분되었음
- 조식제공의향이 가장 높은 집단(노드)은 4번으로, 민박수익의 가계소득 비중이 중간이며 매출액이 200만 원 이하인 민박들임. 그 다음으로는 6번 집단(노드)의 의향이 높은데, 이들은 민박수익의 가계소득 비중이 중간이며 매출액이 800만 원 이상인 민박들임. 그 외 집단(노드)들은 비슷한 수준의 의향을 가지고 있음

■ 농어촌민박 시장 변화 뚜렷

- 앞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조식제공은 공급자적 측면에서 수익확대 또는 방문객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식제공이 어느 정도 민박객 유인이나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어촌민박이 시장변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농촌관광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에 새롭게 진입하는 집단(젊은 연령대, 귀농/귀촌집단 등의 특성을 지니는 집단)의 경우에 그 특징이 두드러짐
- 공급자 집단의 변화는 수요자 집단의 농촌관광 동기 변화에서 기인함
-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2012)를 살펴보면 농촌관광 동기에서 휴식 및 휴양 목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농촌관광 동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국내 관광시장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표 2-13〉 식사제공 민박과 비제공 민박의 차이

(단위 : 년, 명, %, 만원, %)

구분		제공 의향 농어촌민박 (n=354)	제공 비의향 농어촌민박 (n=558)	모르겠다 (n=88)
농어촌민박운영기간		9	9	8
총수용가능인원		29.7	27.1	23.2
1년평균 방문객수		318	415	297
재방문비율		33.9	37.5	35.3
연매출액		1642	1350	1262
민박업 수익의 가계소득 비중		49.4	48.6	50.1
위치	마을 안	61.6	67.4	72.7
	마을 밖 소규모 집촌	21.8	16.8	11.4
	마을 밖 단독형태	17.2	15.8	15.9
촌락 특성	농촌	50.6	48.0	53.4
	어촌	21.2	25.6	22.7
	산촌	9.9	7.3	5.7
	관광촌	18.4	19.0	18.2
방문객 변화	점차 감소	60.5	66.1	61.4
	점차 증가	13.8	13.3	12.5
	현상 유지	25.7	20.6	26.1
운영 형태	전업	36.7	44.1	50.0
	민박+부업	24.6	21.5	20.5
	주업+민박	38.7	34.4	29.5
부업/주업 유형	농림어업축산	55.9	67.7	52.3
	자영업	33.3	21.7	40.9
	직장생활	7.2	8.4	4.5
	기타	3.6	2.9	2.3
인근식당 조식제공	그렇다	64.7	64.4	56.0
	아니다	16.5	11.8	15.5
	때에 따라 다르다	15.7	20.2	22.6
	기타	3.1	3.6	6.0
조식제도화 동의여부	있다	77.1	15.4	10.2
	없다	12.1	59.7	8.0
	모르겠다	10.7	24.9	81.8
식사제공 여부	있다	42.9	7.3	17.0
	없다	57.1	92.7	83.0

- 부업/주업 유형은 운형영태에서 '민박+부업', '주업+민박'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분석

〈그림 2-17〉 식사제공여부에 따른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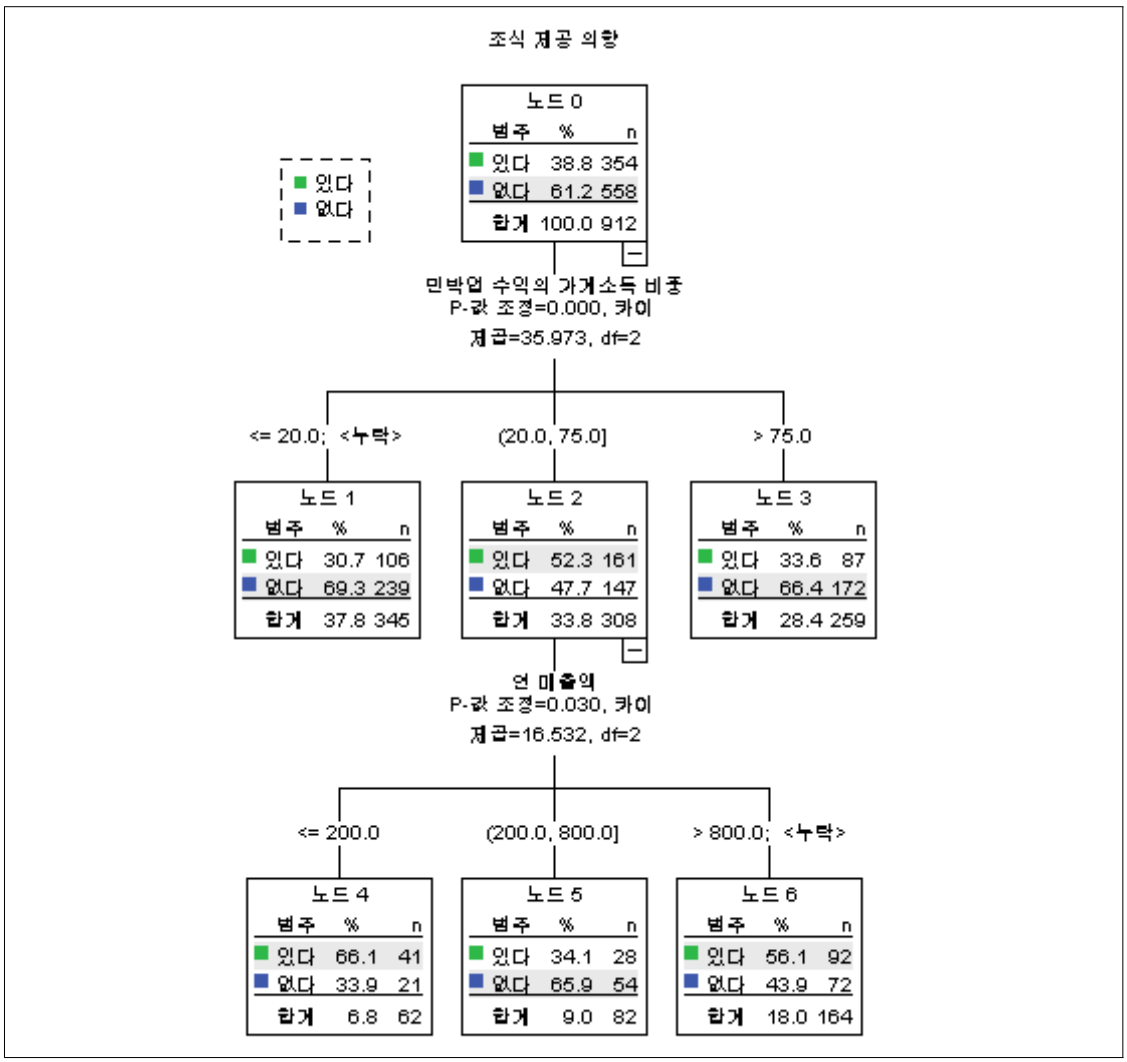

〈표 2-14〉 농촌관광동기

(단위 : %)

년도	휴식 휴양	명승 풍경	식도락	유적지	테마 파크	레저	건강	농업 체험	지역 축제	농산물 구입
2009	15.1	17.7	12.1	5.5	5.1	4	4.4	5.8	2.3	3.8
2011	33.6	27.7	19.9	11.6	6.5	5	3.1	5.1	7.8	9.3
2012	53.8	5.0	–	3.0	–	–	0.4	6.3	7.9	4.2

주1: 2011년까지의 자료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자료
주2: 2012년 설문지와 2011년까지의 설문지에서'농촌관광 동기'유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2012)

다. 농어촌민박 문제점

1) 농어촌민박 관련 제도적 한계점

■ 농어촌민박 및 유사시설의 명칭 혼용

- 농어촌민박은 민박명칭 사용에 제한이 없어 민박으로 시설을 신고하더라도 펜션, 기타 명칭(예: 해뜨는 언덕, 봄향기펜션, 사랑채) 등 민박이 아닌 다른 상호명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어 일반 숙박시설과 농어촌민박 구분이 어려움

- 관광펜션 또는 휴양펜션과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을 관광펜션 으로 오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 관광펜션으로 인식하고 민박에 투숙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용이하지 않음

■ 법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민박 운영

- 농어촌민박은 일반숙박시설에 비해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특징이 있어 타 시설보다 쉽게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실제 농촌지역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되어 있음

- 2012년 농어촌민박과 펜션이 등록된 비중을 살펴보면, 농어촌민박:펜션의 비율이 62:1로 농어촌민박이 월등히 높음

- 다만, 민박등록 후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관련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미흡하고, 이를 처리할 규정이나 지침 미비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음

① 민박 신고 후 주소지 이전 등 민박사업자 요건 위반

② 시설 규모 위반
- 다수의 사업자가 여러 동을 각각 신고하여 민박 단지로 운영
- 민박 신고 후 불법 증축(주택 및 창고 등 다양한 형태로 증축) 등

③ 입지 규정 위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일반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을 조성하여 민박으로 신고한 뒤 펜션 영업

-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기준, 시설기준 등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들이 민박으로 신고 되어 세제혜택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 요건을 위반하고 외부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외소득을 목적으로 한 농어촌민박의 원래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있음
- 특히 위반을 하더라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민박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재신청에 제한이 없어 상벌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 시설 및 운영 규정 미흡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①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1조 이상 비치, ②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는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숙박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나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항목만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사항도 서비스 품질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
-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민박은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함
- 이 외에도 청소년 혼숙 문제, 예약 및 취소에 관한 불공정거래 등 관련 법 제외 및 사업자 사후교육 부재로 민박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

2) 농촌관광 시장 적응화 기반 미흡

■ 품질관리 체계 미정립

- 농촌관광에 관련된 최근의 지표를 살펴보면 농촌관광 시 숙박시설을 포함한 환대시설의 역할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숙박시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음

- 반면, 현재 농어촌민박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시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관련 해외사례연구(한국농어촌공사, 2013)의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보면, 농어촌민박(GITE, BAF 등)에 대한 자세한 품질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농촌관광에서 민박이 경쟁력을 갖추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분류되면서 일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품질관리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민박시설 이용 시 최소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민박의 긍정적 브랜드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박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됨
- 민박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최소 품질 미확보)는 펜션 등 유사시설의 명칭 사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어촌민박 시장 세분화 적응기반 미흡

- 국민여행 실태조사(2013)에서 조사된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2010년 3천1백만 명에서 2011년 3천5백만 명, 2012년 3천7백만 명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참가횟수 및 여행비용도 증가추세에 있음
- 국내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시설도 관광 패턴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에서도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① 민박, 펜션, 캠핑, 야영, 부띠크호텔 등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 형태 다양화

② 농촌체험, 휴식/휴양, 로컬푸드, 지역축제 등 방문목적 다양화

③ 저가시설에서 고가시설까지 선택범위 다양화 등

-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급자측면에서 민박사업자의 불법, 편법 운영을 가중시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소규모 민박사업자의 경우 변화하는 여행, 농촌체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더욱 영세화되면서 민박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함
- 농어업, 농어촌이 가지는 가치를 전달하고 지역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제한적 시설 운영 규정

- 「농어촌정비법」에서 제시된 농어촌민박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숙박과 조리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숙박이나 취사, 농산물판매 등의 행위는 가능하나 조식을 포함한 음식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 과거 농촌관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범위가 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숙박과 취사에 한정된 서비스형태 만으로도 농어촌민박이 숙박시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나,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음식제공의 경우 농어촌민박이 다른 일반숙박시설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합법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현실임

3) 민박운영의 환경적 측면의 한계

■ 다양한 숙박형태 등장으로 민박 시장 위축 우려

- 농촌관광 지출구조에서 숙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16.7%임.(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2012) 특히 과거에 비해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숙박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한정적이었던 숙박시설은 전통적 호텔, 펜션, 민박에서 벗어나 캠핑, 게스트하우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단일 숙박형태 내에서도 시설이 유형화 되고 있음

- 민박 시장 세분화는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되며,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경쟁관계가 심화될 수 있어 시장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숙박시설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숙박시설 중에서 많은 부분의 시설은 펜션 등의 형태로 운영하며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민박요건을 벗어난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전통적 민박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시설은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품질관리 체계 미정립, 운영관리 규정 미흡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

■ 농어촌민박 성장을 저해하는 휴가제도

- 한국의 휴가문화는 농촌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휴가패턴과 달리 짧은 휴가일수, 단기 휴가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촌에서 휴식, 휴양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음

- 한 기업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휴가사용은 평균 휴가일수 10일에 사용 휴가일수 7일로 농촌민박이 활성화 되어있는 프랑스에 비해 23%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 휴가일수 10일, 사용 휴가일수 7일 / 프랑스 휴가일수 30일, 사용 휴가일수 30일

〈그림 2-18〉 전세계 직장인 유급휴가 사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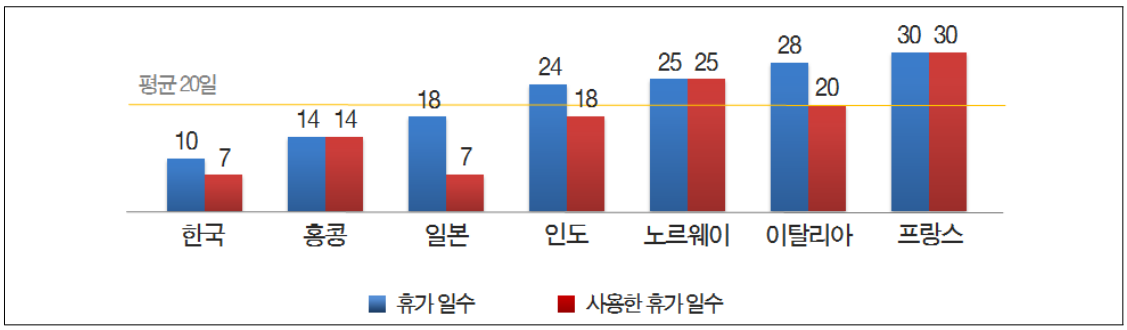

자료 : 익스피디아, 2013

4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가.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1) 농어촌민박 정체성 강화

■ 「농어촌정비법」 내 민박활동 다양성 보장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이 숙박, 취사 등과 같은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다른 숙박시설과 경쟁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농촌관광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서비스영역 확대가 필요함
- 다만, 확대되는 서비스 영역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외소득 확보의 일환으로 운영 가능한 범위여야 함
- 농어촌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민박 운영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취사 서비스 외에 음식제공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의 음식제공 서비스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여 농촌체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민박시설별 제공하는 메뉴에 따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또한 음식제공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

■ 민박사업자 기준 강화

- 현재 「농어촌정비법」 의 민박사업자 기준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으로 그 외의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민박사업 신청 시 주소지확인만으로 민박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박신고를 위한 일시적 주소지 이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박사업자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 관련 기준은 민박사업 신고 시 실 거주기간을 포함한 지역 거주자로 사업자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주소지 이전 시 민박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표 2-15〉 민박사업자 기준 강화 내용

구분	내용
신고 자격요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사후 관리	•민박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취소 •주소지 이전 이후에도 민박 운영을 지속할 경우 시정명령 후 정지처분

■ 민박시설 규정 강화

- 농어촌민박 시설 규정은 수동동식소화기 1식,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체시설 보유 시 제외)를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함
- 민박이 접객시설임을 고려할 때,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이 간소화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 강화가 필요함
- 농어촌민박은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환대시설 규정을 두지 않으며,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규정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2-16〉 시설규정 강화 내용

구분	내용
안전규정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 필수시설 확대
위생규정	•객실, 욕실 등 숙박객이 이용하는 시설은 월 1회 이상 소독 •침구류는 숙박객 1인 사용시마다 세탁 •환기 및 안전을 위한 창문 확보 •취사시설은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2) 유지 및 관리 체계 정비

■ 관리감독 강화

- 농어촌민박의 불법적 운영형태는 유지관리 기준 부재, 관리감독 미흡, 처벌규정 실효성 부재 등에서 기인함
- 민박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관광의 한 분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 분야는 관리감독 체계 개선과 관련 규정 미 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 유지관리의 경우 소방·안전 및 위생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이행하며, 관리감독은 민박 신고 시와 운영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표 2-17〉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사항

구분	내용
민박 신고 시	•농어촌민박 신고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실사점검 후 처리
민박 운영 시	•소방, 안전, 위생에 관한 정기적 단속·점검 실시 –정기적 점검 실시

■ 기준 위반 시 제재항목 강화

- 농어촌민박의 불법적 운영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민박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하며,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위반할 경우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도 농어촌민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정지 및 폐쇄 등과 같은 제재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감독 인원 및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어 사업장 폐쇄가 되더

라도 민박 재 신고 시 제약이 없으므로 규정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제재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규정위반에 의한 사업장 폐쇄 시 해당 민박사업자는 민박운영을 위해 재신고 시 일정기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나. 서비스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1) 품질기준 마련

■ 품질관리규약 등 기준 개발

- 유럽의 농촌민박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은 소비자가 민박이용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박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
- 국내 농어촌민박에서도 환대시설로 민박이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여 농어촌민박이 농촌관광 브랜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여 민박 활성화에 기여함
- 품질관리규약은 현재 시행중인 농어촌민박 등급제와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품질관리규약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객실 세부규정 : 객실환경, 비품 등

② 취사시설 세부규정 : 취사시설 설비 및 품목 등

③ 서비스 규정 : 농촌체험을 포함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기준 등

④ 주변 환경 : 민박시설 주변 경관 등

⑤ 기타 : 지역 농산물 활용 규정 등

■ 민박 유형 구분

- 농어촌민박 유형은 품질관리규약 및 농어촌민박 등급제 실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농어촌민박 시설 및 제공서비스 등을 안내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박유형은 전통적인 농어촌민박, 펜션형 농어촌민박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민박 유형에 따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시설 및 서비스 내용을 달리 적용하여 농어촌민박 신뢰도를 높임

2) 민박사업자 교육

■ 위생 · 안전교육 시행

- 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이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
- 민박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숙박시설과 같이 위생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해당 부문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생 및 안전 교육 시 공정거래, 환대서비스 등 민박 운영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

제3장 해외 사례 검토

1. 사례 검토 개요
2. 프랑스 사례
3. 독일 사례
4. 시사점

1 사례 검토 개요

■ 사례검토의 목적

- 본 장의 목적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6차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의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농어촌민박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제공을 위한 근거 및 시사점을 도출함

■ 검토 방법

- 검토의 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함
- 우선, 국내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현황과 법·제도적 관련 문헌(정부자료, 정책자료, 연구자료 등)을 검토함
- 외국의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문헌(국내외 논문, 외국 정부 자료 및 정책자료, 연구자료, 인터넷 매체 등)을 검토함
- 외국의 사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국내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조사 대상인 해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로 한정함. 프랑스와 독일은 서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유럽 공동농업정책을 이끌어가는 선두국가이며 농촌관광, 농어촌민박 등이 1950년대부터 성장하여 관광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내 적용을 위한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2 프랑스 사례

가. 프랑스 농촌관광

1) 일반현황

- 프랑스의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 정도로 자동차산업과 비슷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농촌관광분야는 매출액 기준 약 21%, 숙박체류일수 기준 38%를 차지하고 있음[2)]

- 프랑스 관광산업 매출액 규모는 2007년 현재 1,120억 유로에 달하며, 약 20만 개에 달하는 관광사업체가 2백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음. 풀타임 고용을 의미하는 전업고용인력기준(ETP)으로는 약 1백만 명이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음(농업부문 90만 명)[3)]

- 관광부문의 교역수지는 농식품부문과 비슷한 규모임

- 프랑스 농촌관광 주요 지표

- 전체 관광여행객의 35% 수용, 전체 침상수의 32%, 체류일수의 38% 담당

- 관광소비지출의 21%(약 150억 유로)

- 농촌관광객의 75%가 프랑스인, 25%가 인근국가 외국인으로 구성

- 캠핑장 3,894개, 수용능력 96만 명

- 전체 캠핑장의 80%가 농촌지역에 분포, 유럽 전체 캠핑장의 절반가량이 프랑스에 분포, 캠핑장 이용객수 증가율 연간 59%, 최근 들어 관광체류 유형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농촌공간(espace rural)으로 정의된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으로서 농촌관광 시장의 규모는 '농촌공간'에서 '방문객'의 소비지출총액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농촌이란 인구 2,000명 미만의 기초자치체(코뮨, 프랑스 전역에 약 36,000개의 코뮨이 있음)를 의미하며, 이렇게 정의된 농촌지역은 국토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 국립통계청은 1990년 이후 관광통계 작성을 위해 프랑스 국토 전체를 농촌공간, 연안공간, 산악공간, 도시공간, 호수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관광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3) Groupe Monde rural, PETIT-DEJEUNER DE LA RURALITE du GROUPE MONDE RURAL, 2008.12

〈그림 3-1〉 프랑스 농촌관광 현황

2) 발전과정

-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대략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왔음

■ 1단계 (1980년대 이전) : 초기단계

- 농촌지역 은퇴농들을 중심으로 농가주택 보전과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충을 위해 B&B개념의 민박활동이 지트운동(movement des gîtes)을 통해 확산됨. 해수욕장 및 스키장 등 대중관광지에 인접한 농촌지역에서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산됨

■ 2단계 (1980~1990년대) : 양적 성장 단계

- 유럽공동농업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이면서(쿼터제 도입 등 시장정책의 후퇴) 현업농가들이 농업경영다각화 차원에서 농촌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함. 직판활동에서부터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되고, 농촌관광이 농업계 내부에서 대안적 시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1988년 농업활동에 대한 법적 성격이 가공과 관광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함

■ 3단계 (1990년대 이후) : 질적 발전단계

- 농촌관광 서비스유형이 농촌체험, 전통식당, 농산품직판, 숙박, 교육, 승마, 스포츠 등으로 다양화되는 한편, 주 고객층이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반관광과 본격적으로 경쟁관계에 들어섬. 이에 따라 품질헌장, 서비스유형별 품질관리규약을 통해 농촌관광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3) 관련 제도

■ 관광숙박시설의 분류

- 프랑스에서 관광숙박시설은 호텔(hôtels), 캠핑장(terrain de camp-ings), 레저휴양공원(parcs résidentiels de loisirs), 관광레지던스(résidences de tourisme), 바캉스마을(villages de vacances), 관광민박(meublés de tourisme)등 으로 분류되며, 이들 시설들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5단계로 등급이(별의 개수) 부여됨

- 관광민박은 개별주택을 활용해 단기간 동안 관광객을 수용하는 시설임

- 프랑스는 2009년도에 관광서비스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한 법률(loi du 22 juillet 2009 de développement et de modernisation des services touristiques)을 제정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분류체계와 등급부여 방식을 개정함

■ 관광활동의 법적 지위

- 프랑스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는 상업적 활동(activités commerciales)과 비상업적 활동(민사활동, activités civiles)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세제적용과 활동주체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다르게 적용됨

- 농업활동(activités agricoles)은 민사활동으로 분류되나, 관광활동은 대부분 상업적 활동으로 분류됨. 농촌법전(Code rural)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이 제공하는 농가에서의 관광서비스 제공활동은 농업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

■ 농업활동의 법률적 정의[4)]

• 농촌법전(L.311-2)은 '농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동식물 생산활동, 농업인이 농업활동의 연장선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가공활동, 농가에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농가생산물을 상업화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식물 또는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순환을 제어·이용하며, 이러한 순환과정에 필요한 하나 혹은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경영자의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경영체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공사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농업활동에 속한다.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저 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 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농가의 관광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지위별 세제 및 사회보험 규정

• 농가의 관광서비스 제공활동은 대부분 농업활동의 연장으로서 법적 지위가 '농업활동'으로 인정되나, 상업 활동이 적용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활동과 상업 활동을 겸하는 겸업 활동으로 인정됨. 대부분의 경우 농가의 관광서비스 제공활동은 '농업관광활동'으로서 농가의 경영다각화 또는 농업경영 보완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음

- 농가의 관광서비스 제공활동이 농업경영 다각화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회보험 측면에서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음. 세제측면에선 일정한도 이내에서 농업소득(BA)으로 간주되나, 한도 이상의 경우에는 제조 및 상업소득(BIC)로 분류돼 과세됨[5)]

4) 프랑스는 상업적 목적의 일반적 상업활동과 상거래가 수반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상업적 목적과 구별되는 민사활동을 법적으로 구분(1966년7월24일법)하고 있으며, 농업 및 자유직업활동을 민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음 : 농업활동, 지적활동(저작활동, 문학, 음악, 영화, 산업재산권, 예술, 연구, 컨설팅, 교육 및 훈련활동 등), 자유직업활동(법률로 정한 자유직업에 속한 활동), 부동산거래활동. 민사활동을 조직하는 민사회사(Sociétés civies)로는 부동산 관련회사와 농업활동 관련회사들이 있음. 농업활동(GAEC, GFA, EARL, SCEA), 부동산 거래활동(SCI, SCA, SCPI...), 기타활동(SCM, SCP...). 농업회사법인은 민사회사법(droit des sociétés civiles)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농업경영체 그룹화를 위한 농업법인(GAEC), 1인농업법인(EARL), 농업경영체의 토지자산과 경영체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농업업인(GFA-GFR)

5) 대략 농촌관광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농업조수입의 30% 이하 또는 5만 유로 이하 한도 내에서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나. 민박 관련 규정

1) 민박 활동 등록

- 농가 등 자신이 거주하는 개별 주택을 활용해 가구가 딸린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간 동안 유상으로 임대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체류시설 등록은 의무사항
-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청에 행정당국이 인증한 관광체류시설 네트워크(예를 들어 Gîte de France 등)의 인증서류와 함께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해 신고해야 함
- 관광체류시설은 가입한 공인 네트워크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함
-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신고증과 신고증 번호를 교부하고, 도(Département)에 관광체류시설 등급분류 신청서류를 넘김
-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은 도에 설치된 관광활동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l'action touristique)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령으로 공포함
- 해당 활동의 법적 지위에 따라 관광체류시설 등록 외에도 임대자는 해당 사회보장기구와 세무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농업활동 성격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은 기업등록센터(CFE)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농업활동으로서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은 농업소득과 구별되는 상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기업고유번호(SIRET)를 취득할 필요 없음

2) 민박활동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규정

- 민박활동은 주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의 가구가 딸린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 체류일정으로 임대하는 활동으로서, 별도의 취사시설을 제공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조식제공은 숙박활동을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별도의 조리시설과 식사장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취사시설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활동임
- 서양의 경우 조식은 조리음식이 아니라, 간단한 음료와 토스트, 샐러드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숙박활동과 연계돼있으며, 숙박과 조식이 민박 이용 가격에 포함돼 있음. 민박집의 가정식을 손님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짐

■ 음식제공활동에 대한 규정

- 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음식제공 활동은 별도의 조리시설과 식사장소, 주문 가능한 형태의 메뉴를 갖추고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모든 관광서비스제공자는 고객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할 때 식품위생규정을 적용받음
- 식료품을 준비하고, 요리를 위해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시설정비와 투자를 필요로 하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 소, 양,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들은 허가를 취득한 도축장에서만 도축될 수 있음
- 농가에서의 도축은 가족 소비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도축이 허용되는 가축은 농가에서 직접 사육한 양, 염소, 돼지에만 허용됨. 단, 수의학적 이유로 긴급 도축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임
- 가금류나 토끼류는 농가가 갖춘 소규모 도축시설(Tuerie)을 이용해 농장에서 도축할 수 있으나 일일 50두 이내여야 하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목적이어야 함
-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동기와는 별개로 전문적인 냉동기기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arrêté du 26 juin 1974, 동물성 식재료의 냉동, 보관, 해동의 위생조건에 관한 규정)

3) 건축 관련 규제

- 지방도시계획 'PLU(Plan local d'urbanisme)'에서 구획한 농업지구(Zones agricoles, Zone A)에서의 건축 활동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농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요한 시설인가 여부는 종종 분란의 소지가 되며 신축 또는 개축,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예외 건축 활동, 허가를 필요로 하는 활동, 사전신고가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됨

4) 기타 규정

■ 도로 상에서의 안내 표시

- 안내판은 도로신호체계를 방해해서는 안 됨
- 관광시설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안내판 설치 불가
- 안내판은 높이 1m, 넓이 1.5m를 초과할 수 없음
- 도로 가장자리에서 최소 5m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가격의 표시

-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자는 재화와 용역의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지트 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임대장소와 임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임대장소의 외부에 이를 알리는 게시물을 비치해야 함

■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자 현혹 거짓 광고에 대한 제제

- "농가 (ferme)", "소작인(fermier)"과 같은 용어 사용의 제한, 이와 같은 용어는 농업적 성격의 관광서비스 제공활동에 한해 사용

  - 치즈 등 농가생산품의 품질을 나타내거나, 원산지 호칭표시가 적용되는 가금류 등에 사용되며, 제조업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농가의 가공활동 차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table d'hote", "produit maison"란 용어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숙박활동을 보완 활동일 것

② 하나의 메뉴만 있을 것과 이것이 양질의 조리시설에서 만들어 질 것

③ 가족 식탁에서 이뤄지는 식사제공 일 것

④ 최대 20명 이내를 수용인원으로 할 것

다. 관련 네트워크

1) 농촌관광의 사업성격과 사업형태

- 프랑스의 농촌관광 활동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의 법적 성격과 사업형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세제 및 사회보장제가 다르게 적용됨

〈표 3-1〉 농촌관광의 사업성격과 사업형태

구분	법적 성격	사업형태	관련명칭
상업적 활동	일반 상업활동	- 개인 - 법인 (EURL, SARL,SA…)	Hotel, Restaurant
비상업적 활동	비농업활동	- 개인 - 법인(EURL, SARL,SA…)	Gite rural, meubles, chambre d'hote
	농업활동	- 농업법인 (GAEC, SCEA, EARL, SCI, GIE…)	Bienvenu a la ferme, Acceuil Paysan

자료: 오현석 외(2003) 농촌관광 금융신상품개발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 농협중앙회

- 농촌관광 사업은 크게 농촌지역의 일반 호텔 또는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활동과 지트나 BAF, Acceuil Paysan(농민적 접대 / 이하 AP로 함)와 같은 비상업적 활동으로 구분됨. 후자의 경우 BAF, AP와 같은

농가의 농촌관광활동은 ‘농업활동’으로서 농업법인 또는 개인(개인농)으로 사업형태가 구분됨(농업관광)

- 농촌관광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여부 등 사업자의 사회보장신분(status sociaux)과 향후 전망되는 매출규모, 가족 노동력의 활용정도, 제공할 서비스 유형,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감독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형태와 네트워크 브랜드(BAF, Gîte, AP 등)를 선택하게 됨

2) 농업회의소의 BAF

-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관리하는 BAF 사업은 농가의 농촌관광활동을 농업적 성격으로 규정한 1988년 관련규정에 따라 본격화되었음

-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관광의 조직화를 위해 중앙(APCA)에 ‘농업과 관광(agriculture et tourisme)’ 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22개 지역과 96개 도 농업회의소에 ‘농업과 관광’ 팀을 운영하고 있음

- BAF 농촌관광서비스는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헌장(품질관리규약)을 제정해 일반 농촌관광 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농가가 수행하는 농촌관광활동의 농업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

- 품질관리규약은 농가의 농촌관광 서비스의 농업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세부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농가는 BAF 네트워크 가입과 브랜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에 설치된 승인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함. 선정된 농가는 BAF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로 제정된 품질관리 규약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농업회의소 중앙회의 '농업과 관광' 사무국은 전체 BAF 사업의 기본발전방향을 세우는 한편, 지방의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에 설치된 '농업과 관광'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농업회의소 중앙회 소유의 등록브랜드인 BAF 마크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밖에도 사무국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 BAF 농촌관광상품의 품질관리규약 제정 및 감독

- 농림부 및 관광부, 국토개발청(DATAR)과 공동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연구의 수행
- 농촌관광 관련 법안의 제안(관련규정, 세제, 사회보장제도 등)
- 농촌관광 전문지침서(références technico-économiques)의 발행
- BAF 오픈데이(Portes Ouvertes-Bienvenue la ferme) : 매년 봄 바캉스 기간을 앞두고 BAF 농가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
- 전국, 지역, 도 별 BAF 안내책자 매년 발행(250만부)
- 인터넷 사이트 운영
- 기타 BAF 농촌관광 홍보활동

3) 지트 드 프랑스

- 프랑스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지트 드 프랑스'는 약 55,000여 개에 달하며, 매년 약 2,500개의 새로운 지트가 농촌지역에 추가되고 있음.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농촌지역 지트 수는 빠르게 증가함(1988년 8,000개에서 현재 55,000개)
  - 지트 소유자 3명 가운데 1명은 은퇴농으로서 지트 소유층 가운데 최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 수공업, 자영업 등 자유 직종에서 활동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지트 소유층을 구성하고 있음
  - 지트활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숙박료 수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지트를 통해 발생하는 농촌지역에서의 숙박료 수입만도 연간 1억5천만 유로에 달하며(연간 숙박객수 3,000만 명), 관광객들이 지트에서 체류하면서 농촌 지역에 발생시키는 간접적 매출효과만도 연간 4억 5천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이밖에도 지트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신축 등에 따르는 투자비용만도 연간 1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프랑스 농촌관광 시장을 조직화하고 있는 지트는 지방행정 체계별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합체에 근무하는 6백여 명의 직원들이 공동마케팅과 홍보,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밖에도 신규가입 지트에 대한 인가를 비롯해 지트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트는 연중운영보다는 겨울철 기간을 제외한 개장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음. 지트의 연간 평균 임대기간은 17주이며, 회당 체류일 수는 1.5주임. 연간평균 점유율은 40%에 달함(임대주간/개장기간)

- 전체 고객의 80%는 프랑스인이며 20%는 외국인임(영국인이 가장 많음). 고객의 50%는 기업의 중상위권 간부급이며, 자유직이 많고 18%는 일반 직원 급임. 고객의 15% 정도는 한 번 방문한 지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72%는 매년 지역을 바꿔가며 지트를 이용하고 있음

- 초기의 지트는 숙박을 위주로 한 농촌관광 상품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점차 승마와 낚시, 스키 등 레포츠활동과 결합한 형태의 농촌관광상품의 추가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었음. 이밖에도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을 갖춤으로써 지트가 이들에게 특별한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음.

- 지트의 농촌관광 상품은 유형별로 품질관리규약이 제정돼 서비스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관광시설로 분류돼 일반 호텔과 같이 이삭 수에 따라 등급이 적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테마 지트가 추가돼 장애인, 승마, 낚시 등 특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트에 관한 설비규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기본 유형 : 지트 뤼랄(숙박), 샹브르 도트(숙박+조식), 지트 당팡(어린이 농촌체험), 지트 드 세주르(단체 숙박), 샬레 루지아르(숙박, 방갈로)

- 테마 지트 : 장애인, 스키, 자연관찰, 포도밭체험, 승마교육, 고성체험, 낚시, 골프, 하이킹, 모터사이클, 산림, 바다, 등 26개 유형

라. 품질관리규정

1) 지트뤼랄(Gîte rural)

■ 서비스의 개념

- 지트뤼랄은 농촌지역이나 바닷가, 산악지역에 위치하며, 하나 또는 복수의 방과 식당 및 부엌시설과 그에 상응하는 위생시설을 갖춘 독립

적인 가옥 또는 임대시설임

- 지트 드 프랑스의 품질헌장 규정에 따라 이삭 수(1-5개)로 안락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표시함. 모든 지트 뤼랄은 법령(l'arrêté du 28/12/1976)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광숙박시설(meublés de tourisme)에 대한 감독과 재분류 절차를 따름

■ 가격

- 임대료는 지트 임대 전체 비용에 해당되며, 평일이나 주말(토요일 16시에서 일요일 10시까지) 가격임
- 등급에 따라 홑이불이나 살림 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난방에 관해 명확히 해야 할 내용들은 모두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2) 샹브르 도트(La chambre d'hôtes)

■ 서비스의 개념

- 샹브르 도트는 '잠자리와 아침식사'라는 의미의 프랑스식 표현임. 하루 또는 몇 일간의 숙박 일정동안 주인 집(농장, 전통적 양식의 농가, 시골 저택, 성 등)을 정비하여 친구처럼 고객을 맞이하는 곳임
- 최대 6개의 방을 임대할 수 있음. 아침식사는 숙박비에 포함되며, 지역 고유의 다양한 별미를 맛보는 기회를 제공함. 샹브르 도트 여주인의 감성에 따라 집에서 만든 여러 가지 쨈과 갓 구워낸 시골 빵, 과자와 치즈, 유제품, 지역 특유의 햄과 소시지를 맛볼 수 있음

3) 따블르 도트(La table d'hôtes)

■ 서비스의 개념

- 숙박을 하는 손님에게만 중석식을 제공. 따블르 도트는 레스토랑이 아니므로 원하는 경우 방 예약 시 미리 알려야 함

■ 가격

- 하루 밤 숙박비용은 방 하나를 함께 쓰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매겨지

고, 숙박비용에는 아침식사 비용이 포함됨. 따블르 도트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사비용에는 전식과 주 음식, 치즈와 (또는) 디저트, 커피, 음료가 모두 포함됨

4) 지트 당팡(Le gîte d'enfants)

■ 서비스의 개념

- 어린이들이 방학동안 농촌이나 바닷가 또는 산촌의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맛보고, 다른 아동들과 농촌생활과 여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임
- 지트 드 프랑스는 어린이를 맞을 수 있는 역량과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사항 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트 당팡을 선발함. 지트 드 프랑스 라벨과 품질헌장(charte nationale de qualité)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질적인 측면이 보증되지만 DDASS(위생사회국)이나 DDJS(청소년체육국)의 정기적인 방문과 감독을 받음
- 지트 당팡은 4-13세 아동을 11명까지 맞이할 수 있음. 최소 규모의 지트 당팡은 자연과 동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 미니 지트를 구성하여 어린이 2-5명을 맞이하기도 함
- 미니 지트는 매우 어린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버터 제작에서 산보(식물 표본뜨기, 열매따기, 피크닉...) 등 너무 힘들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주니어 지트는 6-1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아동 5명까지는 주인 혼자 인솔할 수 있지만 6명부터는 프로그램 진행자 1명 이상의 보조를 받음. 방학기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문화 활동 : 연극, 춤, 정보과학 입문, 외국어 등
- 손으로 하는 활동 : 그림, 도자기, 에나멜 등
- 체육 활동 : 산보, 스키, 스포츠용 소형 보트, 마술(馬術), 수영 등

- 이들 프로그램 중 몇 가지 주요 활동을 지도하는데, 아동들의 생활리듬을 고려하면서 하루 또는 일주일에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

함.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 교사가 함께 함

- 지트 드 프랑스가 승인한 청소년클럽(Club-Jeunes)은 자격증을 소유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12-35명의 청소년들을 맞이함. 휴식과 개성 및 활동성을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행글라이더와 스키, 모험 뿐 아니라 마술(馬術) 및 야영생활로 구성됨. 청소년체육부에 의해 방학센터로 승인된 청소년클럽들은 방학 동안이 아니라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체험학습이나 겨울수련회를 주관하기도 함

5) 매혹적인 샹브르 도트(Chambres d'hôtes de charme)

■ 서비스의 개념

- 프랑스의 전통을 느끼게 해 줄 800여 개의 매혹적인 샹브르 도트는 전통적인 남부 농가나 봉건시대 영주의 저택, 성을 정비한 것임. 개성적인 내부 장식과 야성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음

■ 가격

-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의 수에 따라 하루 밤 숙박비(아침 식사 포함)가 매겨짐. 따블르 도트 사용 시 식사비에 모든 코스(전식, 주요리, 치즈와/또는 디저트, 커피, 음료)가 포함되며 정액을 게시함

3 독일 사례

가. 독일의 농촌관광

1) 농촌관광 현황

■ 독일 관광시장

- 독일 관광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970억 유로(약 140조 원)이며,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액의 4.4%에 달함. 이는 관광산업이 독일의 자동차산업이나 은행산업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줌. 또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90만 명이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7%에 해당함. 관광업은 독일의 국민경제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유럽에서 침대수 10개 이상인 숙박업소에 숙박한 통계를 보면 4억7백만 명으로 스페인의 3억8천3백만 명, 프랑스의 3억8백만 명보다 더 많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독일 농촌관광시장

- 독일의 농촌관광은 1960년대 후반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 즉, 바이에른(Bayern)주의 소규모 가족 농가를 중심으로 산비탈의 낙농과 축산물 관광과 연계방안을 제안한 '바이에른의 길'이 발표됨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었음

  - 알프스 산악지역의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가들의 농업경영유지가 어려워지자 이들이 이농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농가가 경영하는 축산을 관광과 연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구상하게 된데서 비롯됨. 바이에른 주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농가에서 휴가를' 정책이 보편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임

-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720만 명이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며 평균 4.9일을 숙박함. 이를 당일 숙박으로 환산하면 1년에 최소 3,600만 숙박이 농촌에서 이루어짐

- 1인당 하루 평균 지출비용은 33.50 유로이고, 한 가족이 한 농장에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560유로임. 이러한 농촌관광을 통한 전체 매출은 약 15.5억 유로(2조 32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관광시장의 6%를 차지하고 있음[6)]

- 농촌관광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Bayern주의 경우 9개 이상 침대를 가진 농장이 5,500여개 이며, 평균 167일 가동하여 연간 1,170만 명이 숙박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약 5,500억 유로의 매출이 발생하고 바이에른주 관광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음

  - 주 고객층은 가족단위와 중년층 그리고 시니어임. 가족단위는 13살 이하의 어린이를 주로 동반하며 평균 3.3명이 움직이며 총 지출비용이 가장 많음. 반면에 1인당 지출비용은 적음

2) 농촌관광 정책

- 농촌관광 관련정책은 별개의 부서나 규정 등이 없이 주로 독일농민연맹(DBV)을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독일농업협회(DLG)와 각 주가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음

  - 독일의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민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농민연맹이나 농업신용은행도 민박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음

  - 독일농업협회는 품질보증 마크를 만들어 엄격한 농가민박을 심사하며 민박농가 등록과 민박농가의 등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농가민박에 대해 보조금 및 저리융자금을 지원하였음.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경영인 지도사업을 전개함

- 특히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각 주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 지역으로부터 대도시 인근의 인구 증가 압력을 받고 있는 대도시 인근지역까지 여건이 상이함

6) 이 통계는 침대수 9개 미만의 부업형 경영체들이 많이 배제된 최소한의 통계치 임

- 그리고 독일은 국토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환경이나 문화재를 포함하여 농촌공간을 정비하며,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를 원칙으로 한 소농 가족중심의 농촌관광을 발전시켜왔음

- 숙박시설의 경우 독일은 객실형 민박, 별채형 민박, 리조트하우스, 야영장,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용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을 구분하고 각 대상별로 시설을 평가함

- 특히 독일 바이에른 주의 경우는 시설, 활동, 이용자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다시 세부시설과 활동으로 구분함.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농가는 어린이용 침대, 놀이터, 탁아소 등의 특수시설과 체력단련장, 건강프로그램, 선텐장, 사우나장 등의 일반시설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고, 승마를 위한 농가는 승마장, 목장, 승마산책로, 말대여장, 승마센타, 따뜻한 식사 등의 시설로 나누어 평가해왔음

■ 농촌관광 관련 규정

- 독일에서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없음. 독일은 전 국토가 연방 건축기본법(Baugesetz Buch-BauGB)에 의하여 지구상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임

- 특히 농촌지역은 연방 건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위 농촌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토지용도 변경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규로는 공업법(Gewerberecht), 음식업종관련법(Gaststaetterecht), 세금법(Steuerrecht), 노동법(Arbeitsrecht), 위생 관련 세부규정(hygienische Verordnung) 등이 있으며 이들 법은 농촌관광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법임

-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의 용도변경(Urlaub auf dem Bauernhof), 즉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위의 법에 관련되며, 농촌지역에 호텔이나 음식점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마을 최소단위)의 효력이 강하여 더더욱 인가가 어렵게 되어 있음

- 농촌관광업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하여야함. 단지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는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 있음

3) 농촌관광 고객 서비스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관광 숙박시설에서 아침 빵은 61%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조식은 49%로 절반 정도가 제공하고 있음
- 제공하는 음식은 약 절반정도(48%)가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제공함. 이는 대부분 고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진 신선한 음식을 선호하고, 농업인들은 원료의 자가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임
- 음식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29%에 해당함

4) 독일관광연맹(DTV)에 따른 농촌관광 숙박시설 분류[7)]

■ 농촌관광 숙박시설

- 독일에서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All-Suite-Hotel : 모든 객실에 거실이 딸린 스위트호텔

② Hotel : 프론트, 식당(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식사 판매 가능), 매일 방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실은 최소 20개 이상이며 객실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음

③ Apartmenthotel : 아파트호텔로 호텔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적음

④ Hotel garni : 숙박과 조식, 음료 및 약간의 음식 제공

⑤ Ferienwohnung/Ferienhaus :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숙소/독립된 건물에 있는 숙소(우리나라의 펜션과 유사한 개념)

⑥ Gasthof : 방을 제공하고 동시에 식당을 함께 경영하며 식사와 음료를 판매함

⑦ Pension : 제한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식사는 투숙객에게만 제공됨

7) 본 분류는 독일여행정보규정(Deutsche Toruistische Informationsnorm, TIN)과 독일관광연맹(Deutsche Tourismusverband, DTV)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서 발췌함

⑧ Privatzimmer : 개인 가정집의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 형태로 침대 수 최대 8개까지 허용

⑨ Jugendherberge : 주로 젊은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스호스텔이며 식사와 음료는 투숙객만을 위해 제공

⑩ Campingplätze (캠핑장), Schulungsheime (교육센터), Vorsorge-und Rehabilitaionskliniken (재활휴양소) 등이 있음

■ 주요 농촌관광 숙박시설

• 2012년 기준 독일관광연맹(DTV)의 등급심사를 받은 Ferienwohnung과 Ferienhaus, Privatzimmer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합계가 62,510개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농업인이 운영하는 경영체수는 약 20,000개로 추정하고 있음[8)]

〈표 3-2〉 독일관광연맹(DTV)의 등급심사를 받은 Ferienwohnung과 Privatzimmer 각 주별 통계

(단위 : 개소)

주	Ferienwohnung	Privatzimmer	합계	추천대상
Baden-Wü rttemberg	7,755	364	8,119	2955
Bayern	19,299	926	20,225	6277
Berlin	45	0	45	24
Brandenburg	1,088	94	1,182	431
Bremen	41	1	42	9
Hamburg	4	0	4	1
Hessen	1,324	99	1,423	520
Mecklenburg-Vorpommern	5,373	42	5,415	1669
Niedersachsen	7,301	274	7,575	2380
Nordrhein-Westfalen	1,986	145	2,131	708
Rheinland-Pfalz	3,885	559	4,444	1400
Saarland	363	15	378	140
Sachsen	1,053	83	1,136	407
Sachsen-Anhalt	397	40	437	94
Schleswig-Holstein	9,163	168	9,331	1629
Thü ringen	563	60	623	182
독 일 전 체	59,640	2,870	62,510	18,826

자료 : DTV(2012)

8) 연방통계청에서는 침대 수 9개 이상의 상업적 숙박업소에 얼마나 숙박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인이 경영하는 경영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나. 민박 관련 제도 및 정책

1) 영업신고

■ 관할지역 경제과에 신고

- 음식과 음료를 투숙객에게만 제공하는 숙박업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함
- 신고 시에 자본회사나 법인경영체는 신고양식, 신분증 및 상업등록증이 필요하며, 개인경영체나 인적단체는 신고양식과 신분증이 필요함
- 수수료는 약 20~40유로 정도 발생함
- 다음의 경우에는 재신고를 하여야 함: 경영자의 이사, 건축물의 변경, 확장, 경영자의 변경, 법적형태 전환 등
- 2013년부터 베를린 같은 경우는 Ferienwohnung, Ferienhaus, Privatzimmer, 캠핑장에서 투숙객에게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할 경우 허가의무에서 제외시켜 영업신고만 하면 됨

2) 숙소 공간

■ 숙소 공간 적합성 판단 주요 지표

- 숙소공간의 높이는 2,50m 이상이어야 함
- 환기가 충분히 잘 되어야 하며 일광이 되어야 함
- 공간의 창문은 순지면의 1/8 이상이어야 함
- 건물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 어떤 다른 도움 없이 정문을 통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함
- 내부는 밝고 계단이 없으며, 0.9m 이상 넓은 문을 통해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문 앞에는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 경사면 6% 이상 기울어지면 안되며, 넓이는 최소 1.2m이어야 하고 양족에 고정된 손잡이가 있어야 함

- 경사면의 시작과 끝에 교단(Podest)이 있어야 하며, 6m마다 중간교단(Zwischenpodest)이 있어야 함
- 교단의 길이는 최소 1.5m 이어야 함
- 복도는 넓이가 1.5m 이상이어야 함
- 화장실은 최소 하나이상 장애인이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4층 이상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함
- 엘리베이터 가운데 하나는 유모차, 휠체어, 환자운반용 들것, 화물수송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층에 멈추어야 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공공노선에서 객실까지 계단 없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함
- 객실 침대가 12개 이상인 숙소는 숙소의 최소 10%이상 장애인이 적합하게 만들어야 함(건축시설 경영체시행령 제16조)

3) 관련 법규 및 규정

■ 객실규정 및 건축관련 규정

- 베를린 건축규정, Bauordnung Berlin
- 숙박업소통계법, Beherbergungsstatistikgesetz
- 베를린 등록법, Berliner Meldegesetz
- 숙박업소 침대 12개 이상: 건축시설 경영체시행령 제14~17조, Betriebsverordnung für bauliche Anlage, §14~17
- 민법 701조 이하(옷장과 귀중품에 대한 책임), Bürgerliches Gesetz, §§ 701ff
- 서비스 정보의무 시행령, Dienstleistungs-Informations pflichten-Verordnung
- 음식점시행령 베를린, Geaststättenverordnung Berlin
- 영업규정, Gewerbeordnung

- 간접도입시행령, Indirekteinleiter-Verordnung
- 가격명시시행령, Preisangabenverordnung

■ 안전관련 규정

- 시설 검사시행령, Anlagen-Prüfverordnung
- 작업장시행령, Arbeitsstättenverordnung
- 베를린 비흡연자보호법, Berliner Nichtraucherschutzgesetz
- 경영체안전시행령,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 생산물책임법, Produkthaftungsgesetz

■ 투숙객 접대 식품 위생 관련 규정

- 유럽연합 식품위생 시행령, EG-Verordnung 852/2004 über Lebensmittelhygiene
- 전염보호법, Infektionsschutzgesetz
- 식품 및 사료법,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 식품 표기 시행령, Lebensmittel-Kennzeichnungsverordnung
- 우유 마가린법, Milch und Margarinegesetz
- 유전자변형 유기물 및 유전자변형 유기물로 생산한 식품과 사료의 추적과 표기시행령, Verordnung über Rückverfolgbarkeit und Kennzeichnung von genetisch veränderten Organismen und über die Rückverfolgbarkeit von aus genetische veränderten Organismen hergestellten Lebensmitteln und Futtermitteln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18/EG
- 식품위생규정 적용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von Vorschriften des gemeinschaftlichen Lebensmittelhygienerechts

■ 소음관련 규정

- 연방소음보호법, 6차 일반 행정규정, Bundes- Immissions schutzgesetz, dazu: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ImSchG
- 소음보호기술지도, Technische Anleitung zum Schutz gegen Lärm 이를 보충하는 부동산이용시행령이 있음

■ 방문객을 위한 공간 게시의무 관련 규정

- 공공 청소년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

■ 직원을 위한 게시 및 의무관련 규정

- 일반평등취급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노동재판법 61조, §61b Arbeitsgerichtsgesetz
- 노동시간법, Arbeitszeitgesetz
- 청소년노동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등등

■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에서 조식제공

- 앞에서 언급한 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투숙객에게는 음식점 허가 없이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주로 소득다각화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Ferienwohnung과 Ferienhaus에서는 대부분 조식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캠핑장에서도 투숙객이 원하면 조식제공이 허용 됨
- 숙박시설에서 투숙객 외에 일반인에게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허가 외에 Hotel이나 Gasthof처럼 음식점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다. 관련 단체 : 독일농민연맹 및 산하'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협의회'

- 독일농민연맹(DBV)은 순수 농민단체로 독일 최대의 농업단체임. 독일농민연맹은 하나의 연맹체로 묶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별 농민을 회원으로 하지 않고 조직과 단체만을 회원으로 하는 최상위 단체연합 조직이기 때문임

- 비록 DBV에 포함되지 않는 몇몇 대안단체들이 있으나, 아직 조직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음

  - DBV는 주 농민연맹단계에서 농민조직률이 평균 90% 이상으로 독일 내 직업집단의 조직률 중 가장 높은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음. 농민조직률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더 높아지고, 주업농은 99% 정도가 조직화되어 있음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는 농촌관광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독일농민연맹 소속 기구임. 주 정부 차원 및 지방 차원의 농촌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괄하고 있음

  - 협의회는 농가민박을 촉진·홍보하고 농가민박 종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주 차원의 관련 단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됨

  - 아울러 농가민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협력 촉진도 주요 과제중 하나임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는 14개 단체회원(12개 주별 지역조직과 2개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후원회원은 독일농민연맹, 독일여성농민연맹, 독일라이파이젠연맹, 농업회의소 중앙회 등 5개 단체임. 이들 후원 단체는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활동을 재정적 및 내용적,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함

라. 품질인증심사

■ 품질인증심사

- 독일의 농촌관광품질관리는 일반적으로 농장이 가입된 협회의 품질관

리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의 대표적인 전국규모 농촌관광 품질관리 단체 가운데 하나는 독일농업협회(DLG)이며 DLG를 통해 가장 모범적으로 품질관리와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197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독일농업협회 인증관리소는 독일산업표준(DIN)에 따라 농촌관광 품질인증표시 수여를 대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독일관광연맹(DTV) 기준에 따른 심사 : 시설에 대한 심사
- 독일농업협회(DLG) 기준에 따른 심사 : 농촌성에 대한 심사

• 인증심사위원회는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위원은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진흥 관계자,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 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함

-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 경우 DLG는 심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결과가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에 중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품질보증마크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인정됨. 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재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재심사 결과 불합격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농업협회(DLG)를 통한 품질관리

• 품질관리 인증심사 자격을 부여 받아 휴가농장, 포도농장, 농촌농장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40년 이상 심사를 해오고 있음

• DLG의 인증을 받으려면 DTV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함. 현재 전 독일에 약 1,000여개의 농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독일농업협회(DLG) 기준에 따른 심사

- '농촌성' 심사 : 농촌경험, 농가 서비스상황, 안전, 전체적 인상 등 약 50개 항목

〈그림 3-2〉 DLG 등급심사를 받은 숙박업소의 공동브랜드

현업 농장, 승마농장

농촌농장, 과거농장
농촌호텔, 귀족저택

포도농장

■ 독일관광연맹(DTV)을 통한 품질관리

- 1994년부터 Ferienwohnung, Ferienhaus, Privatzimmer의 품질을 등급화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 독일에 약 62,000개의 숙소를 심사하여 별을 부여하였음. 심사는 매 3년마다 다시 이루어짐

- 독일관광연맹(DTV) 심사 기준

  -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심사로 독일관광업계가 정하는 최소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19가지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반 시 품질인증 대상 농장에서 제외됨

  - 독일관광업계가 정하는 심사기준: 기본시설, 객실, 공간조건, 조망, 서비스상황, 여가시설, 숙박시설 종류, 테라스, 정원/녹지, 주차/진입로 등에 대해 약 800개 항목을 평가

〈표 3-3〉 독일관광연맹의 등급심사 후 별 부여 기준

표기	설명
★	단순하며 목적에 맞는 전체 설비. 요구되는 것이 존재하나 낡아있을 수 있음
★★	목적에 맞는 중간정도의 설비로 견고한 상태
★★★	살기에 적합한 좋은 설비. 보기에 좋은 상태
★★★★	품질 좋은 설비. 전체가 조화되는 품질
★★★★★	1등급의 빼어난 설비. 잘 가꾼 높은 품질에 뛰어난 인상

4 시사점

■ 정체성(농촌다움, 농촌성) 유지를 위한 각종 규정

- 독일과 프랑스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득다각화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법 등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농업인이 하는 모든 방문객 맞이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를 농업인과 농어촌주민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체계, 세제 등을 적용함. 독일의 경우에도 민박 관련 재정지원(보조금 또는 저리 융자)은 농업인에 한정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농업을 전업 또는 부업(농장의 성격이 분명해야 함)으로 하는 농장(손님유치 공간은 농장과 연결되어야 함)은 '농장휴가', '농촌휴가'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골마을 인상을 주는 환경의 농장에서는 '농촌휴가'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 조직의 품질관리에서도 '농촌다움', '농촌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유사 숙박시설 및 음식점업 등과의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정체성 유지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임. 최근 프랑스의 Gite는 그 품질관리규약 및 운영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함
- 품질관리규약에서도 농업인, 농촌다움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품질관리 및 등급평가의 주요한 항목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민간 네트워크조직을 통한 품질관리

- 프랑스와 독일 모두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조직에서 가입된 민박농가에 대한 품질심사, 등급평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 네트워크의 품질관리활동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활동임

- 특히 프랑스의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 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품질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대표적인 네트워크로는 Gite와 BAF가 있음. 독일의 경우에는 농민협회와 관광연맹이 함께 품질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음. 농민협회에서는 '농촌성' 부문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민박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연맹에서는 '시설' 부문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민박 방문객에 대한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들 네트워크 조직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음. 최근 프랑스의 Gite는 그들의 품질관리체계 등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음

■ 구체적 내용을 다룬 품질관리규약

- 독일과 프랑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은 각 민박이 가입한 네트워크 조직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각 네트워크 조직은 이를 위해 품질관리규약 수립하고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 샹브르도트(숙박과 조식을 제공)의 품질관리규약의 예를 보면, 품질관리규약에서 기본 윤리, 정의, 인가조건(접객 기본 요소, 서비스 제공, 침실, 배수시설, 기타 시설), 임대 및 임대료, 광고, 라벨(브랜드) 사용, 회비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부록2 참고)

- 독일의 품질심사기준에서도 최소기준은 물론 각종 설비와 시설, 비품, 공간구조 등(심지어 평면TV인지 LCD인지 등도 평가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부록3 참고)

- 또한 민사상의 책임과 사고, 식중독, 도난, 화재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손님맞이와 위생 규정 및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참가 또한 의무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의 품질관리 규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방문객의 편의성 측면이며 하나는 공급자의 농촌성

측면임. 즉, 농촌·농업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임

■ 시설, 성격 등에 따른 유형화 · 세분화

- 프랑스와 독일은 농어촌민박을 시설, 활동,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Gite의 경우 2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품질관리규약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BAF의 경우에도 1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특히 각 유형별 명칭사용을 엄격히 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명칭만으로 그 농가의 서비스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도 '농장휴가', '농촌휴가', '포도농장휴가' 로 1차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승마농장, 유기농장, 어린이방학농장, 캠핑, 펜션, 별채형 펜션 등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최소시설 등을 규정하여 품질관리 및 등급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조식제공은 숙박활동의 연장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조식제공 활동은 숙박활동의 연장으로서 당연시되는 활동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님. 다만, 품질관리규약 등을 통해 몇 가지 기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세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 및 법규, 행정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함. 만약 투숙 객 외에 일반인에게도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별도의 음식점 허가를 받아 일반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함
- 또한 주인이 직접 제공해야 하고 한 가지의 메뉴로서 가정식이어야 함. 음식 재료는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

해야 하며 아침식사 비용은 숙박비용에 포함됨

- 중식 또는 석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프랑스에서는 별도의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조식제공 민박과는 상이한 품질기준이 적용됨. 또한 품질관리규약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기술지침서와 등급내역서의 항목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제4장 법 개정을 위한 검토

1. 법이론과 입법실무
2.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3. 법 개정의 방향

1 법이론과 입법실무

가. 법령의 구조와 위계

- 국내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리고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가 구성되어짐

- 이러한 법령의 체계는 일정한 위계를 형성함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음

-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심사할 수 있으며,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반여부는 대법원에서 심사함

1) 헌법

-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근본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전문, 헌법 속에 담긴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함

2) 법률 ·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률은 국회입법 원칙에 의한 성문의 법규범으로 죄형법정주위, 조세법률주의 그 밖에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함

-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발령하며,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효력을 갖게 됨

〈그림 4-1〉 법률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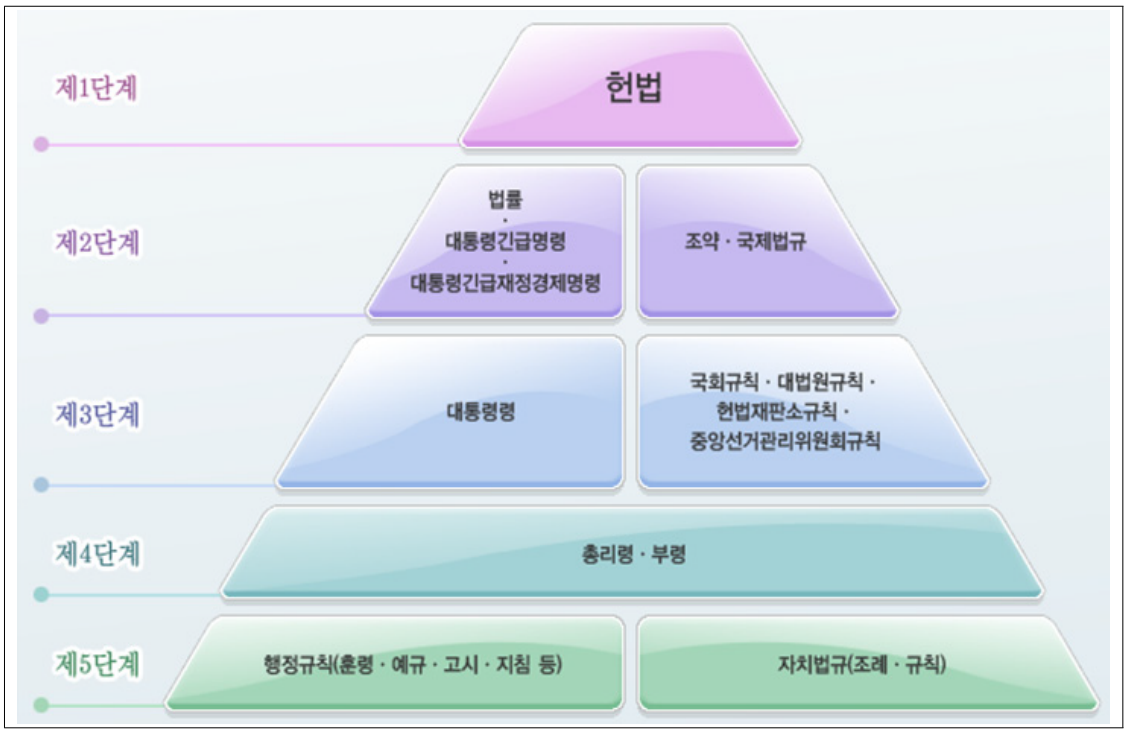

자료 : 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elaw.klri.re.kr)

3)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 국제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법규란 대한민국이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 관습을 말함
-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법 준수를 규정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4) 명령

-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의 전반에 걸쳐 있음
- 한편,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임

5) 행정규칙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말함

나. 법령의 입법절차

-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의뢰 등 일련의 입법절차는 해당 법령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법령안 주관기관에는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부·처·청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포함됨
-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장관 또는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거나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해당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함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청·위원회 등이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안관서로 하여 제출

- 또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법령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특정 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음

〈그림 4-2〉 정부의 입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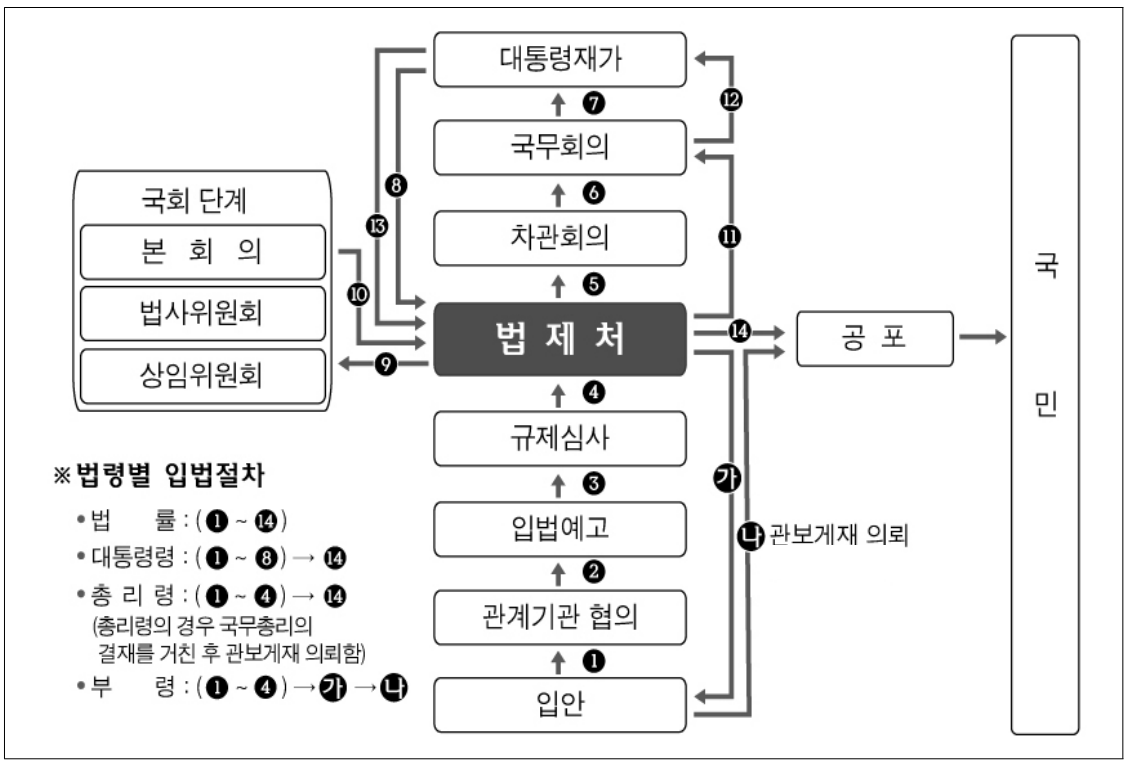

자료 : 법제처(2012) 법제업무편람

다. 행정법의 기본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하며,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보면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종속됨은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됨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 되며, 이러한 원칙으로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공익의 원칙

- 공익의 원칙은 행정활동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법규가 공익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행정청은 공익판단을 전제로 행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 평등의 원칙

- 평등의 원칙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기본원칙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함
- 평등의 원칙은 특별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라는 의미이며, 특히 재량권 행사에서의 한계규정으로 기능을 수행함. 평등의 원칙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불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하는 것임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비록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여야한다는 구속성의 원칙임
- 이는 행정에서의 자의금지의 원리로 형성된 개념으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이라든가 법률 스스로 행정에 재량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비례의 원칙

-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흔히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의 개별내용으로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 인정됨

■ 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고, 그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여기에서 행정작용과의 실체적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나 통상 행정작용의 행사와 그에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인과관계나 목적적 관련성이 존재할 경우 실체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

2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가. 민박과 민박사업자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임.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서 농어촌민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본 보고서 2장 1절에서 제시하였듯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

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 농어촌민박임

- 본 보고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4-3〉 민박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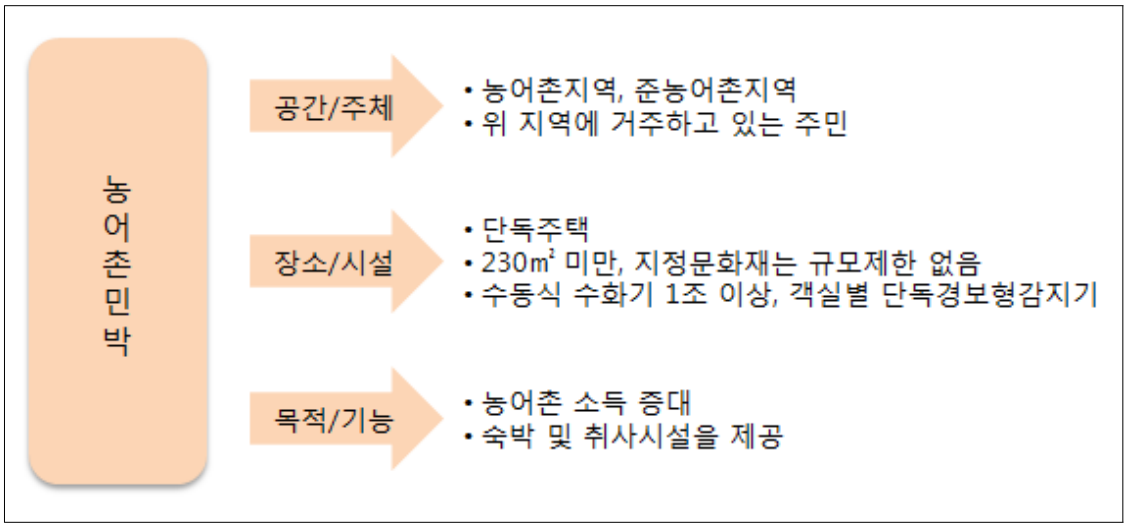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나.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

- 민박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① 민박사업 시설의 입지 관련 법령, ② 사업 신고 관련 법령, ③ 운영 관련 법령, ④ 폐업 관련 법령, ⑤ 지도·관리 관련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박사업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음

〈표 4-1〉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

구분	법령	규정사항
시설의 건축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사업규모 및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건축법	농어촌민박 입지 및 건축 시 준수 사항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민박 입지 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
	기타 관련 법령	입지에 따른 제한
사업 신고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운영개시 절차 규정. 사업자신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운영 관련 법령	농림사업시행지침	운영관련 준수 사항
	상법 및 상업등기법	상호 관련 규정, 상호등기
	소득세법	소득세 납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
	기타 관련 법령	운영과 관련한 규정
폐업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
지도·관리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지도관리 및 벌칙, 과태료 규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평가 및 등급결정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민박의 정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운영개시 절차 및 신고 관련 사항, 지도관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숙박업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농어촌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을 따르고 있음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법령의 핵심적인 사항은 농어촌민박이 상업활동이 아닌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즉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불구하고「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활동(호텔, 모텔, 여관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해 보임

- 특히 「농어촌정비법」에서 민박의 입지요건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농어촌민박을 통한 수익은 2,000만원 까지 부외소득으로서 면세되고 있음

1) 농어촌민박 입지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지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 준농어촌지역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임
- 현행법상 민박은 건축물의 용도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이며(「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말함)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 또한,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건축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
- 민박사업 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위의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과 더불어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에 관해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이 중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음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토지는 각 필지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부여받고 있음
- 28종의 지목 중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됨(「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목이 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지목이 대가 아닐 경우, 지목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건축 제한 관련 법령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 어촌, 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경우가 많음. 따라서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위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특정도서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 공원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2) 사업 신고 관련 법제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

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 신고내용 : 소유자 개인정보(신고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신고인 개인정보, 민박 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주택 연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건물형태, 주택 내 화장실 수, 식수 유형, 화장실 유형, 오수처리시설 용량 및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및 설치연도,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유수
- 신고서류 :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용권증명서류(신고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 신고를 통해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농어촌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

•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세율 10%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3) 운영 관련 법제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당위적·선언적 수준에 불과함

■「농림사업시행지침」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 2013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상법」 및 「상업등기법」

-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음

■「소득세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민박의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는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민박을 운영한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부가가치세법」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해 규정. 민박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함

■ 그 밖의 운영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민박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박의 홍보 시 규제사항에 관해 규정. 민박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음. 이는 민박이용계약을 체결한 민박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민박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함

■ 자금지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시설자금 : 연이율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 연이율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액에 따라 상이 적용)
- 운영자금 : 연이율 3%, 2년 이내 상환

4) 폐업 관련 법제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됨(「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4)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5) 지도 · 관리 관련 법제

■「농어촌정비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위 사항을 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 동법 제130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또한 동법 제132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민박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 농어촌민박은 신청자들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하며 등급구분을 위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민박시설 주변의 경관·환경 및 서비스 수준
-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

나. 조식제공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문제점

1) 음식점 관련 법규 검토

■「식품위생법」

-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으로 규정됨. 그 세부종류는 6가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임(「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이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업종이며, 그 외 4개 종류는 신고업종임

- 한편 「식품위생법」은 위생교육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또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진단의 실시방법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음

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음식점의 영업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됨.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2) 도농교류촉진법과 농어촌민박의 식사 제공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음식 제공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서 적용됨(「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음식 제공 관련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의 경우 음식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

3) 농어촌민박에서 조식제공과 관련한 법규와 문제점

-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적용이 까다로워 현실에서는 농어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점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에서의 식사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관련한 위생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서 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방법으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음식 제공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해 특례로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3 법 개정의 방향

가. 법령개정 배경

■ 농어촌관광 숙박시장의 변화

- 농어촌지역에서의 관광시장은 양적성장과 함께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호텔, 모텔, 리조트 등 일반 상업적 숙박시설 외에도 농어촌민박, 펜션, 캠핑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등장하고 있음
- 특히 비상업적 저가 숙박시설인 농어촌민박은 2000년대 들어 펜션의 확대와 캠핑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장에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요구받고 있으며, 농어촌민박활동의 정체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EU 등 선진국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은 호텔, 리조트, 레지던스 등 상업적 숙박시설의 확대와 함께 비상업적인 숙박시설인 주거용 단독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박활동이 확장돼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민박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왔음
- 대개 이와 같은 민박시설에서의 숙박활동은 비상업적 활동으로 분류되며, 법적 지위나 세제, 사회보장 적용 측면에서 상업적 숙박활동과 구분되고 있음. 숙박활동에 따른 위생 및 안전 관련 규정들도 제한사항을 두어 민박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 적용하는 추세임
- 민박활동의 확대와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주민의 민박활동과 농업인의 민박활동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임(프랑스의 지트와 BAF). 특히 프랑스는 현업 농업인들이 농가주택을 이용하여 민박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다각화(소위 6차산업화)차원에서 농업인의 이러한 민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농어촌민박활동의 확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추세

와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 활동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 숙박시장에서의 농어촌민박의 위상

- 우리나라 전체 숙박시장에서 농어촌민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우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숙박활동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지역 숙박시장의 주요 공급자 그룹은 농어촌민박, 펜션, 캠핑 등이며, 이들 공급자 그룹이 농어촌 숙박시장을 세분화하고 있음. 펜션 등이 품질고급화와 조식제공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고가 숙박시장에서 일반 상업적 숙박시설과 경쟁구도를 갖춰나가고 있는 반면, 농어촌민박은 중저가 숙박시장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캠핑활동으로 인해 상당부분 숙박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장에서 농어촌민박활동이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활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품질관리, 운영 체계 및 육성방향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나. 개정 방향

■ 농어촌민박활동의 재정의

- 농어촌민박활동을 단순 숙박활동에서 조식을 포함한 활동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민박 사업주체가 중식과 석식을 별도로 제공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활동은 '숙박활동의 연장' 또는 '숙박활동을 보완하는 활동(complément de l'hébergement)'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임.
- 단, 식당업에서 중·석식을 제공하는 활동과 구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식제공활동은 가정의 주방시설을 이용한 조식제공이어야 하며, 반

드시 숙박객 이외에는 조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조식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료에 포함된 요금체계를 갖춰야 하며, 조식에 주문형 메뉴체계를 갖추지 않아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필요함

■ 농어촌민박 유형의 구분

-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단독주택을 이용해 수행하는 농어촌민박활동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농어촌민박의 사업주체가 일반 농어촌지역주민이 수행하는 것과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이용해 수행하는 민박활동을 구분하고 있음. 농가주택을 이용한 민박시설은 일반주택을 이용한 민박시설과는 주택의 특성, 주변 환경, 농업과의 연계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갖는 숙박시설로서 민박시설 중 별개의 범주로 설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활동의 연장으로 농업활동의 지위를 얻고 있음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명칭사용 제한, 위생관리 강화 등 관리 개선

- 농촌관광이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성장한 EU 등에서는 일반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촌관광 관련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농가의 가공활동, 근거리유통망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반영되고 있음
- 이는 전체 지역관광시장에서 농촌관광시장을 차별화해 농촌관광의 시장쉐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펜션’, ‘농어촌민박’, ‘농가민박’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한을 분명히 하는 한편,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련 위생규정 등이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관련 교육

도 실시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사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소방안전시설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시설 요건이 미흡하며 경보시설은 배제되어 있고 소방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서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개정(안) 수립

■ 미래를 고려한 단계적 개정

- 앞서 언급한 개선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8개 부문으로 나타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촌민박의 상황과 요건,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부 부문은 본 연구를 통한 개정안에 반영하며, 그 외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의 역량, 농어촌민박을 둘러싼 환경 조건,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고려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조식 서비스 제공 및 자격요건, 시설기준, 관리감독 등의 강화는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그림 4-4〉 주요 개정내용 별 적용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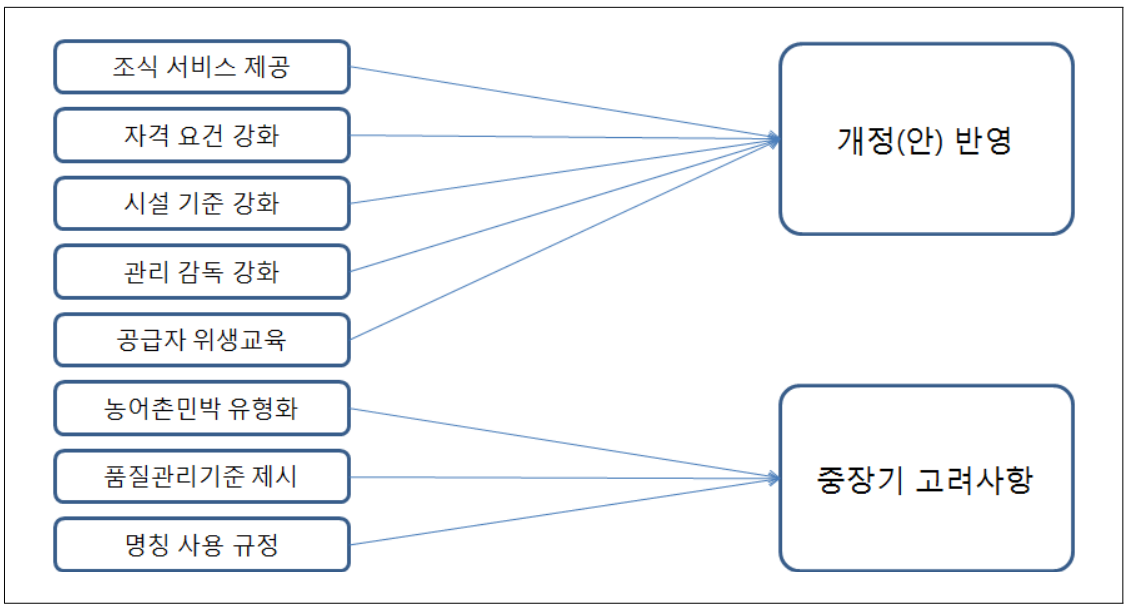

제5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1. 법령 체계
2. 법령 개정(안)
3. 중장기 고려사항

1 법령 체계

가. 현 법령 체계

■ 주요 조문내용 및 관련 하위법령

- 「농어촌정비법」 중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총 8개로 나타나고 있음. 각각의 조문과 주요내용 및 관련 하위법령과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제2조에서는 농어촌민박의 정의와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는 관련 규모 및 시설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제86조는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내용, 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88조는 지도 · 감독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표 5-1〉 현 법령 체계

구분		조문 내용	관련 하위법령
제2조	정의	농어촌민박의 정의를 제시	
제81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 · 육성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	시행규칙 제47조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 관련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시행규칙 제49조
제88조	지도 · 감독 등	지도 ·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위반사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 규정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세부규정 위임	시행규칙 제51조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제130조	벌칙	위반사항에 따른 징역 및 벌금 규정	
제132조	과태료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령 제97조

- 제89조에서는 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와 관련한 위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90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130조는 벌칙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32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시하면서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하위법령 세부 내용

-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은 시행령 제97조와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 제51종의 4개 조문임

- 시행령 제97조는 '별표4'를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7조는 '별표3'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시행규칙 제49조는 신고 관련 사항과 내용,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1조는 '별표4'로 처분기준을 제시함

〈표 5-2〉 현 하위법령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시행령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	별표 4
시행규칙	제47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시	별표 3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및 신고내용과 증명 서류 등 제시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분 제시	별표 4

나. 개정(안) 법령체계

■ 개정(안) 법령체계

- 현 법률 및 하위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법은 제2조, 제86조, 제88조, 제132조를 개정하며 제86조의2를 신설함. 제81조, 제89조, 제90조는 현행을 유지함
- 시행령은 제97조 별표4를 개정하며, 제74조의2를 신설함
- 시행규칙은 제47조 별표3, 제49조 별지서식, 제51조 별표4를 개정하며 제49조의2 별표7, 제49조의3을 신설함

〈표 5-3〉 개정(안)의 법령체계

현행		비고	개정(안)	
제2조	정의	개정 신설	제2조	정의 [시행령] 제74조의2
제81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 · 육성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현행과 같음 개정	제81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 · 육성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시행규칙] 제49조 별지서식	개정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제86조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시행규칙] 제49조 별지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49조의2, 별표7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88조	지도 · 감독 등	개정	제88조	지도 · 감독 등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현행과 같음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현행과 같음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0조	벌칙	개정	제130조	벌칙
제132조	과태료 [시행령] 제97조 별표4	개정 개정	제132조	과태료 [시행령] 제97조 별표4

2 법령 개정(안)

가. 농어촌민박 재정의 및 자격기준 강화

■ 농어촌민박 재정의 : 조식서비스의 제공 추가

-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숙박과 취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농촌관광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취사시설 등'의 제공에 '숙박활동의 연장으로서 조식서비스 제공'을 추가함

-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투숙객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농외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박덕병(2012)의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투숙객의 80%가 식사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공급자들의 약 40%가 조식 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공급자 중 고령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역량이 부족한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농어촌민박 공급자들이 조식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을 높이길 희망하고 있음

- 단, 농어촌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는 조식에 한정함. 이때, 농어촌민박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중·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의 음식제공활동과는 구분되는 활동이며, 숙박활동의 연장 또는 보완하는 성격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 제공은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의 연장활동으로 규정함. 따라서 중식이나 석식, 투숙객 이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금지됨

  - 이는 농어촌민박의 정체성(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유지 · 강화하고 기존 음식점업과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임

■ 자격기준 강화

- 농어촌민박은 지난 2002년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민으로 한정된 자격 제한규정이 완화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후 도시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난립, 난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2005년 개정을 통해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농어촌주민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음

- 즉, 농어촌주민의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해 실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이면 민박사업이 가능한 것임. 이로 인해, 실제 거주자가 아닌 외지 사람이 임시로 주소를 옮겨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어촌민박 여러 동을 각각 달리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의 정체성을 유지 · 강화하고 일반 펜션이나 숙박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조항을 신설함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민박을 재정의 하여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를 개정함

- 농어촌민박 재정의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로 개정

  -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 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정

〈표 5-4〉 「농어촌정비법」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2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2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신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2)

- 농어촌민박 자격요건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함

〈표 5-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4조의2(주민의 자격) 법제2조제16호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

나. 시설기준의 강화

■ 조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식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용이 필요함.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기 때문

에 위생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기준 강화

• 한편,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최소한의 안전시설 요건이 미흡한 실정임. 농어촌민박은 시설요건으로 소화설비로 수동식소화기, 경보설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설비 등이 부족함

■ 개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 시설기준은 법제81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47조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7조는 별표3을 통해 이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설기준 강화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을 개정하여 반영함

-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으로 개정

- 시설의 종류에 "조식제공시설" 항목을 추가하고 그 시설기준을 신설함

•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은 부록1에 별도로 제시하였음

〈표 5-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기본시설 : 「소반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신 설〉	조식제공시설 : 주방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냉장·냉동시설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함.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이 있어야 함.

다. 신고 관리체계의 강화

■ 조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고 개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식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면, 신규 농어촌민박의 경우 조식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신고 시부터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농어촌민박은 변경신고를 통해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파악해야 함. 조식 서비스의 제공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지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적용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민박 신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 한편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양식에는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어 기본시설 설치여부 및 불법 개조 사용유무 등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함

- 이에 관련 신고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86조제4항은 신고필증의 게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주문에서 준수사항을 제시하므로 본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해당 조항은 신설되는 준수사항 항목에서 제시하도록 개정함

〈표 5-7〉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③ (생략) ④ (삭 제)

■ 신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은 시행규칙 제49조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을 신설하여 신고요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

〈표 5-8〉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⑤ (생략) ⑥ 〈신 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어촌민박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75호~제80호 서식)

-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별지 제75호~제80호 서식(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신고필증 발급대장,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개정하여 조식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서식의 개정(안)은 부록2에 별도로 제시하였음

라. 위생·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 준수사항 강화 및 신설

- 농어촌민박이 유사 숙박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 및 관리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현행 농어촌민박 관련 법규에서는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조식제공이 허용되면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여겨짐. 또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규정도 최소한으로 되어 있어 각종 사고에 취약함. 게다가 청소년의 혼숙으로 인한 탈선 및 사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음

- 이에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를 신설하여 주요한 준수사항은 법조항으로 제시하고, 그 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음

■ 의무 교육 이수

-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향상의 중요한 요소는 공급자들의 역량강화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조식제공의 허용을 통해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경우 위생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규정함

■ 신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 삭제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을 본 조항에서 제시하며, 요금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음

- 조식 제공의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신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및 별표7)

- 신설된 법제86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하였음. 위생관리기준은 별표7을 신설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함

- 별표7은 부록3에 별도로 제시하였음

〈표 5-9〉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위생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위생·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 5-1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9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신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규정하도록 제시함

  -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영업을 위해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민박의 경우 숙박, 조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교육내용

을 고려할 경우 4시간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교육내용은 숙박시설 및 관리에 대한 위생, 조식제공과 관련한 위생, 소방 및 안전,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 등임

〈표 5-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9조의3(교육) ①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위생·안전·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연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내용은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 안전관리, 운영관련 규정 등으로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제4항 따른 교육실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마. 관리 · 감독의 강화

■ 관리 · 감독의 강화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 명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조항을 개정함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88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그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표 5-12〉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바. 벌칙 규정 강화

■ 조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고 개정

- 농촌관광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벌칙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됨. 특히 제86조의2에서 제시된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폐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를 개정하여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32조를 개정하여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130조)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의 강화에 따라 이에 대한 위반 시 벌칙규정을 강화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음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132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음

〈표 5-13〉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0조(지도·감독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제130조(지도·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표 5-14〉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 별표4)

- 법제13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임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 별표4를 개정함
- 별표4 개정 내용은 별도로 부록4에 제시하였음

사. 기타 개정

■ 개정(「농어촌정비법」 제82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개정

〈표 5-15〉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개정

〈표 5-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3 신구조문대비표

가. 농어촌정비법 신구조문대비표

〈표 5-17〉 「농어촌정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2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의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2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③ (생략) **④ (삭 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위생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위생·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30조(지도·감독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제130조(지도·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	개정(안)
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표 5-1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신 설〉	제74조의2(주민의 자격) 법제2조제16호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표 5-1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⑤ (생략) ⑥ 〈신 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어촌민박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 설〉	제49조의3(교육) ①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위생·안전·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연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내용은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 안전관리, 운영관련 규정 등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항 따른 교육실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4 중장기 고려사항

가. 농어촌민박의 유형구분

■ 취지 및 방향

- 농어촌민박을 서비스 세분화 추세에 맞게 조식제공 여부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하는 경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조식제공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이용해 수행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가민박'으로 구분함
- 이와 같은 유형구분의 목적은 조식제공 여부에 따라 농어촌민박활동 서비스를 세분화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농어촌민박 등급제와 품질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문을 통해 농어촌민박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현재 농어촌민박의 상황과 펜션과의 구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제시(안)

농어촌민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종 농어촌민박사업 : 이용객이 잠을 자거나 취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에 조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 2종 농어촌민박사업 : 이용객이 잠을 자거나 취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에 조식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
3. 농가민박사업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가주택에서 이용객이 잠을 자거나 취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와 함께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나. 명칭사용

■ 취지 및 방향

- 농촌관광이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성장한 EU 등에서는 일반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촌관광 관련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농가의 가공활동, 근거리유통망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반영되고 있음
- 이는 전체 지역관광시장에서 농촌관광시장을 차별화해 농촌관광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펜션', '농어촌민박', '농가민박'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한을 분명히 하는 한편,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 및 명칭사용에 대한 사항은 다루기 어려우며 특히 농어촌민박의 유형화와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 역시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

■ 제시(안)

농어촌민박사업의 명칭사용 제한

①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1종 농어촌민박사업, 2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민박
2. 농가민박사업 : 농가민박

②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조직이나 개인의 시설에 이 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이나 농가민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품질관리기준의 제시

■ 취지 및 방향

-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중심으로 품질관리기준을 각 민박 서비스 유형별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품질관리 및 등급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등급평가의 경우 「도농교류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품질관리기준과 등급평가기준을 연계하여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관광객 · 투숙객 만족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민박을 통한 농외소득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 정립

■ 취지 및 방향

-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제공은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닌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서비스 제공활동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민박에서의 조식제공은 숙박활동의 연장으로서 당연시 되는 활동이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다만, 관련 위생사항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규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인이 직접 제공하고, 한 가지의 메뉴로서 가정식이어야 함. 또한 재료는 민박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아침식사 비용은 숙박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본 개정 내용에 최소한의 시설규정과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숙박활동의 연장으로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그러나 행위의 목적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판매한다는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이에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다만 농어촌민박의 정체성과 현 시점에서의 농어촌민박 서비스 수준, 규모 등을 고려하고, 유사 숙박시설과의 구분문제 등과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중장기 고려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제6장 기대효과 및 결론

1. 기대효과
2. 요약 및 결론

1 기대효과

가. 농어촌민박의 정체성 강화

-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제공 활동으로 일반 숙박 서비스나 음식 서비스와 차별화된 활동이라 할 수 있음. 즉, 직업으로서의 숙박 서비스 제공 활동이 아닌 농어업인의 부업으로서의 활동이며, 공급 주체가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업으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차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공급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경우, 이미 농어업인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농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 관광서비스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럽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재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 · 농촌이라는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나. 농어촌민박을 통한 소득창출 확대

-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을 재정의 하여 조식 서비스를 허용하게 함으로서 농어가의 소득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농어촌민박에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부 민박에서 제도권 이외 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중소규모의 민박에서 소득확대의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제도권 내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농촌관광 등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들 관광객들은 숙박 시 조식에 대한 요구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농어촌민박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은 농어촌민박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향상으로 이어길 것으로 여겨짐

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 향상

- 농어촌민박은 타 숙박시설 등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편임.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 등이 부족한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임
- 그러나 시장 진입 이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어 농어촌민박 시장 자체가 품질 낮은 숙박 시설로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본래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특히 조식 서비스의 제공 허용에 따라 관련 위생규정 등이 필요하며, 기존 시설규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음
- 더욱이 본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생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위생, 안전 등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일련의 개정은 향후 농어촌민박이 관광시장 및 숙박시장에서 주요한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짐

라. 농어촌민박 관리 개선

- 준수사항의 신설 및 강화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관련 조항의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음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에 대하여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에게만 해당된 지도 및 개선 명령을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또한 신설 및 강화된 준수사항 및 신고요건 등에 대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능동적인 지도 감독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관리 활동의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활동이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요약 및 결론

가. 연구의 개요

- 주5일제 시행 및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관광숙박시설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에 대한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러나 펜션, 캠핑 등 유사 경쟁시설의 성장으로 농어촌민박 숙박수요는 잠식당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

나. 농어촌민박 현황

- 국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어촌민박은 예외적인 시설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설형태와 사업자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타 숙박시설에 비해 등록, 시설, 관리 등의 관련 법령이 완화되어 있음. 다만, 농어촌 소득구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를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최소시설 규정 역시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주민의 사업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숙박과 취사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농어촌민박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숙박, 취사를 포함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민박의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방문객 기준 약 780만 명의 수준임. 이는 국내 농촌관광 시장규모인 6,425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농촌관광에 있어 농어촌민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한편, 국내 숙박시장의 총규모는 1조 8,500억 원으로 농어촌민박이 국내 숙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5%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은 총 21,971개소에 달함. 2005년의 농어촌민박은 총 11,147개소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의 현 거주지 평균 거주기간은 33.2년임. 평균 민박 운영기간은 7.5년이며, 지역출신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6.3%, 타 지역 출신자는 43.7%로 조사되었음
- 2012년 농어촌민박을 방문한 민박객 수는 평균 352.4명이었으며, 200명 미만이 방문하는 민박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민박 운영을 통한 수익은 평균 연 1,35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가구가 59.7%를 차지. 조식제공이 제도화 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36.8%가 필요하다, 38.3%가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조식제공 의향에 있어서는 35.4%가 조식제공 의향이 있었으며, 55.8%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정적인 응답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소규모의 농어촌 민박들임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점으로는 농어촌민박 및 유시시설(특히 펜션)과의 명칭 혼용의 문제가 있으며, 타 시설에 비해 규정이 완화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운영 이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특히 준수사항 등 관련 사항이 부재한 실정임

다. 해외사례 검토

-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다각화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성', '농촌다움'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

하기 위한 규정들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체성을 타 유사 시설 및 일반관광 시장과의 경쟁에 있어 핵심요소로 활용함

- 둘째,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 조직에서 민박에 대한 품질심사, 등급평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품질관리활동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임
- 셋째, 품질관리규약은 매우 구체적으로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품질관리규약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문객 편의성 측면과 농촌 정체성 측면임
- 넷째, 민박을 유형화·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프랑스 Gite는 2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각각의 시설, 활동,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품질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조식제공은 숙박활동의 연장으로서 당연시 되는 활동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나, 품질관리규약을 통해 몇 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인이 직접 제공하고, 한 가지의 메뉴로서 가정식이어야 함. 또한 재료는 민박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아침식사 비용은 숙박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라. 법 개정을 위한 검토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민박의 정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운영개시 절차 및 신고 관련 사항, 지도관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숙박업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농어촌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을 따르고 있음
-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법령의 핵심적인 사항은 농어촌민박이 상업활동이 아닌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즉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활동(호텔, 모텔, 여관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적용되는 것임
- 특히 「농어촌정비법」에서 민박의 입지요건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농어촌민박을 통한 수익은 2,000만원 까지 부외소득으로서 면세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적용이 까다로워 현실에서는 농어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점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에서의 식사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관련한 위생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서 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민박활동을 단순 숙박활동에서 조식을 포함한 활동으로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의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함. 또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요구됨
- 다만 현재 농어촌민박의 상황과 요건,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률을 개정함
- 법은 제2조, 제86조, 제88조, 제132조를 개정하며 제86조의2를 신설함. 제81조, 제89조, 제90조는 현행을 유지함. 시행령은 제97조 별표4를 개정하며, 제74조의2를 신설함. 시행규칙은 제47조 별표3, 제49조 별지서식, 제51조 별표4를 개정하며 제49조의2 별표7, 제49조의3을 신설함

바. 기대효과

-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을 통한 소득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민박의 품질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민원의 감소, 농어촌민박 관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부록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 본 시 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 습 관 (기 본 시 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농원사업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조식제공시설	○ 주방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냉장·냉동시설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하며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이 있을 것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록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전입일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용도지역		용도지구	
대지 면적	㎡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 (면적)	개(㎡)	객실 수 (면적)	개(㎡)
조식제공여부	[ ] 여 [ ] 부	하수처리구역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시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주택 내 화장실 수	[ ] 수세식 개 [ ] 재래식 개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휴대용비상조명등	대	
	조식제공시설	주방 공개여부	[ ] 여 [ ] 부	
		조리대	[ ] 유 [ ] 무	
		냉장 및 냉동시설	[ ] 유 [ ] 무	
		환기시설 또는 창문	[ ] 유 [ ] 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당 농어촌민박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 후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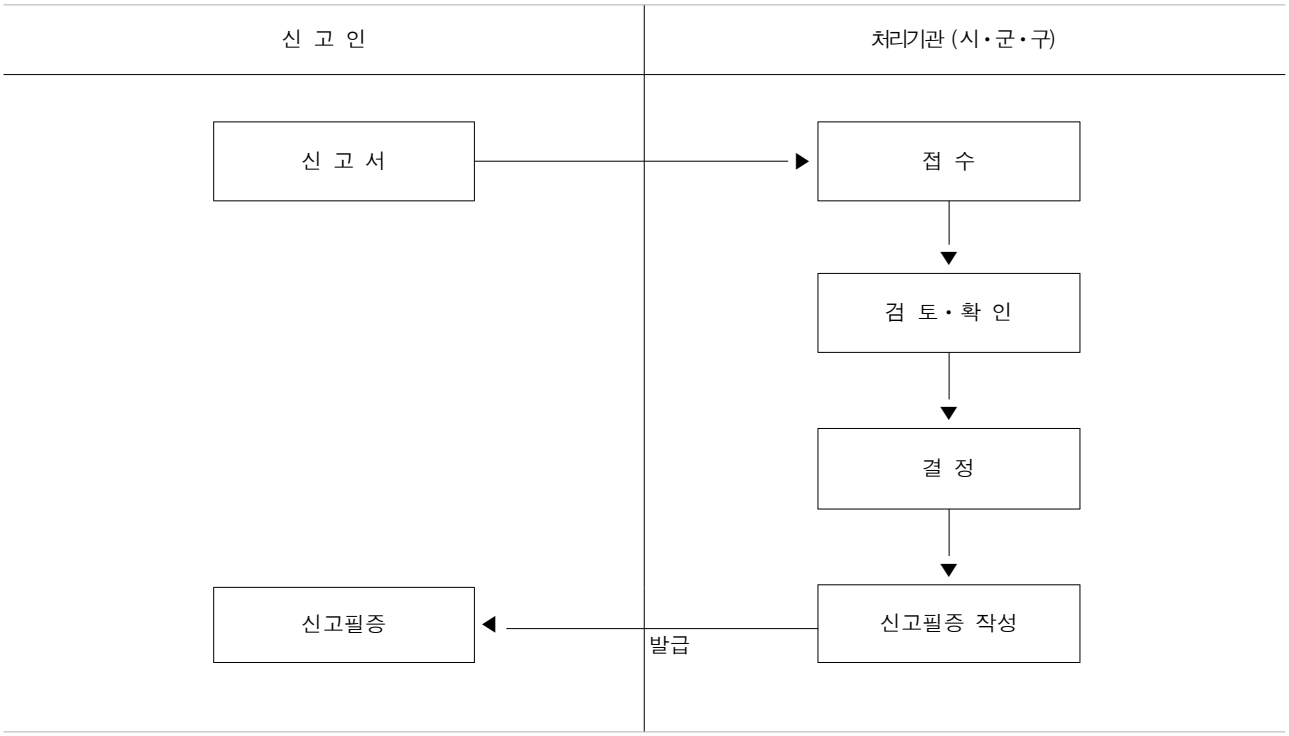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8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성 명:

생년월일:

민박 명칭:

소 재 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9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

신고번호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신고 연월일	조식 제공 여부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0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table>
<tr><td>민박
명칭</td><td colspan="5"></td><td>신고번호</td></tr>
<tr><td rowspan="2">소 유 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5">(전화:)</td></tr>
<tr><td rowspan="2">운 영 자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입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전화:)</td></tr>
<tr><td colspan="2">민박 소재지</td><td colspan="3"></td><td>민박 명칭</td><td></td></tr>
<tr><td colspan="2">대지면적</td><td>㎡</td><td colspan="2">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택면적</td><td>㎡</td><td colspan="2">하수처리구역 여부</td><td colspan="2">□구역 내
□구역 외</td></tr>
<tr><td colspan="2">전체방 수
(면적)</td><td>개
(㎡)</td><td>객실 수
(면적)</td><td>개
(㎡)</td><td>조식제공
여부</td><td>□여
□부</td></tr>
<tr><td rowspan="6">시설</td><td>건물 형태</td><td>□단독
□다가구</td><td>주택 내
화장실 수</td><td></td><td>주택 내
취사시설
수</td><td></td></tr>
<tr><td>식 수</td><td colspan="2">□상수도 □지하수
□기타</td><td>화장실</td><td colspan="2">□수세식
□재래식</td></tr>
<tr><td>오수처리시설</td><td colspan="5">용량: ㎥/일 설치연도:</td></tr>
<tr><td>단독정화조</td><td colspan="5">용량: 인용/일 설치연도:</td></tr>
<tr><td>소 방 시 설</td><td colspan="5">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td></tr>
<tr><td colspan="2">특기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사 진</td></tr>
<tr><td>작성자</td><td>소속</td><td></td><td>직위</td><td></td><td>성명</td><td></td><td>작성일</td><td></td></tr>
</table>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부록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별표7

[별표 7]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의2 관련)

구 분	준 수 사 항
숙 박 위 생	○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매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 이불·베게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세탁 및 건조해야 한다.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숙 박 제 공	○ 청소년 등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식 품 위 생	○ 주방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 부패 및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통해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식 제 공	○ 반드시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주문형 메뉴를 제공하지 않으며, 조식요금은 숙박료에 포함시켜 제시해야 한다. ○ 가능한 한 지역 내 농특산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소 방 및 안 전	○ 소방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기 타 운 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분쟁해결기준(환급규정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위생 · 안전 ·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수료해야 한다.

부록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 별표4

[별표 4] <개정 2011.3.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8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132조	20	40	80

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	20	40	80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법 제132조 제1항 제2의2	20	40	80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20	40	80
마.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20	40	80
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5호	20	40	80
사.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6호	20	40	80
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7호	20	40	80
자. 법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8호	20	40	80

부록5 농어촌민박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농어촌민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Ⅰ. 총론

1. 목적

○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을 관련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 농어촌정비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운영 및 관리의 기본방향

○ 운영자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환경, 정체성이 유지·보전되도록 농어촌민박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 운영자는 방문객과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해야한다.

○ 운영자는 고객을 접대할 때 환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운영자는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한다.

○ 운영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운영 및 관리의 기본절차

○ 농어촌민박의 정의 및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신고한다.

○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농어촌민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 등을 개선한다.

○ 민박활동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점검관리를 한다.

Ⅱ. 농어촌민박의 정의 및 기준

1. 농어촌민박의 정의

가. 관련법 규정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2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및 조식을 제공하는 사업

○ [소득세법]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나. 농어촌민박의 정의

○ 즉,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및 조식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농가부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2. 농어촌민박의 자격기준

○ 첫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둘째,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3. 농어촌민박의 입지기준

가. 건축 관련 기준

○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분류된 28종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에 한정된다.

○ 만약 건물을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군지역 중 주거지역, 녹지지역 : 건축가능(단, 4층 이하)
- 도시·군지역 중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건축 가능(단,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유통사업지역은 건축 불가능
- 도시·군지역 중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은 건축 불가능,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건축가능(단,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름)
- 관리지역 : 건축가능(단, 4층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상황에 따라 가능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름
- 자연취락지구 : 건축가능(단, 4층 이하)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민박사업 시설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민박사업 시설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정된 취락지구에 한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단독주택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나. 지목

○ 민박사업 시설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대(垈)인 곳에 건축할 수 있다. 전·답 등의 농지에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 등 산지에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4.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조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1조).

○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조식제공시설 : 주방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냉장·냉동시설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함.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이 있어야 함.

Ⅲ. 운영의 준비

1.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가. 신고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항).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나. 신고필증의 발급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 필요 시 신고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다. 변경신고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항).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민박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민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 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나. 사업자유형의 결정

○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1조제2항).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
-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사업자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 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Ⅳ. 운영

1. 영업소득 신고

○ 민박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농어민이 농어촌민박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49조 및 제67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다.

○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나. 소득세의 납부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한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2.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위생·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위생·안전·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연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교육내용은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 안전관리, 운영관련 규정 등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항 따른 교육실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위생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매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 이불ㆍ베게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세탁 및 건조해야 한다.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등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

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 주방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 부패 및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통해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드시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주문형 메뉴를 제공하지 않으며, 조식요금은 숙박료에 포함시켜 정액제로 제시해야 한다.
- 가능한 한 지역 내 농특산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분쟁해결기준(환급규정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위생·안전·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수료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 손님맞이는 가족적이고 친절한 환대분위기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가급적 운영자가 손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많은 대화와 접촉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식사의 재료는 농가에서 생산하거나 인근 농가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한다.
- 농어촌민박의 주변은 청결하면서도 농촌다움을 자아내도록 해야 한다.
- 운영자는 자신의 역량에 맞게 농촌체험, 교육체험, 교육농장 등의 활동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고객에 대한 방문카드를 작성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타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박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다.
- 민박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민박의 홍보 시 규제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박 사업자는 민박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민박 사업자의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

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박이용계약을 체결한 민박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민박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Ⅴ. 폐업신고

1. 민박사업 폐업신고

○ 민박사업을 그만 두려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4).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그러나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3항).

2. 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제9호서식).

-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Ⅵ. 지도·감독 및 벌칙 등

1. 신고요건에 대한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제6항).

2. 지도 · 감독 및 개선명령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게에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88조).

3. 처분기준

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			

4.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과태료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법 제132조 제1항 제2의2	20	40	80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20	40	80

Ⅶ. 부칙

○ 이 지침은 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단속은 2○○○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참고문헌

강동규 · 오현석 · 송완구(2013).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관련 해외사례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민권익위원회(2013).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

류광훈 · 조동주 · 김나현(201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국민여행 실태조사.

박덕병 · 김경희 · 윤유식(2010). 농가민박 이용객의 여행 동기에 따른 세분시장과 방문객 선호에 따른 서비스품질 만족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2) pp163-177.

박덕병 · 안옥선 · 조록환 · 채해성 · 김경희 · 손은호 · 도경록 · 이가현(2013). 농촌체류 관광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사업 경영전략 개발. 농촌진흥청.

박시현 · 김용렬 · 권인혜 · 류경선(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처(2012). 법제업무편람.

심원섭 · 이양림 · 신현정(2012). 한옥숙박 체계적 육성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2010). 안동고택체험 브랜드 매뉴얼 운영자용.

오현석 · 김현주 · 김정섭(2003). 농촌관광 금융신상품개발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 농협중앙회.

이영진 · 윤지환(2013). 법령 검토를 통한 펜션의 범위 규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5(1) pp251-268.

정옥희(2012). 농어촌 민박지역의 입지특성에 관한 고찰. 동북아관광연구 8(2) pp157-173.

지역아카데미 내부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www.klaw.go.kr)

프랑스 농림부(1988). Décret n° 88-25 du 4 janvier 1988 / Décret relatif au caractère agricole, au sens de l'article 1144 (1°) du code rural, des activités d'accueil touristique développées sur l'exploitation agricole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APCA(2008) L'agritourisme, un outi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d'attractivité du territoire.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Urlaub auf dem Bauernhof und Landtourismus in Deutschland e.V. (BAG), Saisonumfrage 2006, Berlin, 2007b

Comité de pilotage du Tourisme Vert(2008)

Conseil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 de Loire-Atlantique, Gîtes chambres d''hôtes concevoir dans l''existant, Guide pour la création d''un hébergement touristique en Loire-Atlantique

Die deutsche Touristische Informationsnorm(TIN) des Deutschen Tourismusverbandes(DTV), www.tourismusverband.de

EG-Verordnung 852/2004 über Lebensmitelhygiene

Expertise 'Urlaub auf dem Bauernhof/Lande', 2008

Francis VARENNES(2004). Guide juridique et fiscal du tourisme rural, IPSO FACTO, Paris.

François Moinet(2000) le tourisme rural, comment créer et gérer?, France Agricole, Paris.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Beherberungsbetriebes, Dok.Nr.:26387, IHK Berlin, 2013

Loire-Atlantique Tourisme Agence de Déeveloppement & de Réeservation Touristiques.(2011/2012) FICHE TECHNIQUE : Gîites et chambres d'hôtes, Labels de qualitée : les conditions d'adhéesion et cotisation.

Markenbibel, Landesverband 'Urlaub auf dem Bauernhof in Bayern' e.V., 2012

Urlaub auf dem Bauernhof - Urlaub auf dem Lande 2010/11, BMELV, 2011

Zahlen Daten Fakten, 2012, DTV

연구보고 2014.01
농어촌민박 조식제공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14. 01.
발 행 2014. 01.
발행인 오현석
발행처 지역아카데미
139-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삼정이오니아 810
전화 02-976-0729 http://www.terrami.org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당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